# I. 개 황

- 경상북도의회 제182회 임시회는 2003년10월21일 개회하여 11월 4일까지
   15일간의 회기동안 4차의 본회의와 연 10차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임시회는 10월21일(화)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82회경상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휴회의건, 도정질문(채희영, 장미향의원)을 한 후 휴회하였다.
- 또한 10월22일(수)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질문 (손만덕, 박종욱, 황복회의원)을 한데 이어 10월27(월) 오전 11:0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3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 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의결한 후 휴회하였다.
- 회기기간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과 태풍피해현장, 각종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실시 하였다.
- 11월4일(화)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자유발언(김정기의원)을 청취한 후 상임위원회위원 선임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선임의건 2003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행정사무 감사계획승인의건과 경상북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역연안 관리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경상북도중소기업지원센터설립및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 제182회 임시회를 폐회 하였다.

# Ⅱ. 의사 일정

# 1. 소 집

가. 집회 구분 : 임시회

나. 소집 근거 : 지방자치법 제38조

다. 소집 요구 : 방유봉 의원외 19인

라. 집회공고일: 2003. 10. 6

마. 집 회 일: 2003. 10. 21(화) 11:00

# 2. 회 기

가. 회의 기간 : 2003. 10. 21 ~ 11. 4(15일간)

나. 개의 횟수

○ 본회의 : 4 회(누계 35회)

이 위원회

구분	계	의회 운영	기획	행정 사회	교육 환경	농수산	산업 관광	건설 소방	ᄩ
급회	10	1	1	1	3	1	1	1	1
누계	156	17	17	21	26	17	19	17	22

※ 누계는 제7대 의회 누계

# 3. 활 동

가. 본회의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고
2003. 10. 21(화)	1 - 레100된 권 차 보 드 시 된 시 차 된 된 리 권 기 시 기	제 1 차
11:00	1. 제182회경상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2. 파키크에 6의 현단합의 전 3. 휴회의건	"
	4. 도정질문	
	ㅇ 채희영의원(문경시, 건설소방위원회)	
	ㅇ 장미향의원(상주시, 기획위원회)	
10. 22(수)		제 2 차
11:00	1. 도정질문	
	○ 손만덕의원(군위군, 행정사회위원회) ○ 박종욱의원(청송군, 교육환경위원회)	
	○ 황복희의원(비 례, 행정사회위원회)	
		નો ૦ નો
10. 27(월)	1. 2003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	제 3 차
11:00	기. 2005년도% 8 국도 발한 롯 기 발의 개세2의 -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원안가결
		제 4 차
11. 4(화)	] 1. 상임위원회선임의건	원안가결
11:00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선임의건	·
	3. 2003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	<i>"</i>
	경정예산안	"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7건)	"
	3. 경상북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부결
	3.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원안가결
	개정조례안	진단/ 견   
	4. 경상북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수정가결
	5.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	"
	조례중개정조례안	

# <의회운영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고
2003.10.21(화) 13:10	ㅇ 2003년도	.행정시 .의회시	·무감시	회기협의의건  계획협의의건  관행정사무감시	제 1 차 원안가결 " 사 "

# <기획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고	
					제 1 차 사 원안가결	
2003.10.27(월)	ㅇ 2003년도	○ 2003년도경상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13:30	- 기획	- 기획관리실 소관				
	ㅇ 2003년도	. "				

# <행정사회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내용)	비고
2003.10.27(월) 13:00	<ul> <li>2003년도경상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li> <li>자치행정국, 사회복지여성국 소관</li> <li>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li> </ul>	

#### <교육환경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고
2003.10.24(금) 11:00	<ul><li>현지확인</li><li>포항제철국가공</li><li>복구사업장(포함</li></ul>	,	풍 "루사" 산사태 면)	

개의일시	심 사 안 건(내용)	비고
2003.10.27(월) 13:00	<ul><li>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li></ul>	제 1 차 원안가결
13.00	○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
10.28(화) 11:00	<ul><li>2003년도경상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li><li>보건환경산림국 소관</li></ul>	제 2 차 원안가결
11.4(화) 10:00	<ul><li>경상북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 조례안</li></ul>	제 3 차 번안동의가결

# <농수산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고
2003.10.27(월) 13:00	<ul><li>농수산국:</li><li>경상북도</li><li>조례안</li><li>2003년도</li></ul>	지역연	무보고(F   안관리   무감시	대풍피해및복구성 심의회구성및 - 계획서작성의 <sup>2</sup> 추가경정예산안	운영 건	제 1 차 원안가결 "
	- 농수신				<del>п</del> ′ Т	"

# <산업관광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내용)	비고
2003.10.27(월) 13:00	<ul><li>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li><li>조례중개정조례안</li></ul>	제 1 차 원안가결
	○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 ○ 2003년도경상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
	- 경제통상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건설소방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내용)	비고
2003.10.23(목)	○ 현지확인 - 구룡포~대보4차선도로확・포장공사 - 경주소방서	
10.28(화) 10:00	<ul> <li>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li> <li>2003년도경상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li> <li>건설도시국 소관</li> </ul>	제 1 차 수정가결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내용)	비고
2003.10.31(금)		제 6 차
10:00		
	○ 2003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	원안가결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사회복지여성국	
	보건환경산림국, 농수산국,농업기술원	
	- 경제통상실, 문화체육관광국, 건설도시국	
	ㅇ 계수조정 및 예산안 의결	

# Ⅲ. 의안 처리

# 1. 본회의

				심의	• 의결				
=	그 분	부의	الرح	가	결	H 권	철회	계류	비고
			계	원안	수정	부결			
	-يا <u>ا</u>	9	9	7	1	1			
	계	(127)	(127)	(115)	(11)	(1)			
	소계	4	4	2	1	1			
	11/1	(55)	(55)	(52)	(2)	(1)			
조	의 회	1	1			1			
  례	제 안	(2)	(2)	(1)		(1)			
	도지사	2	2	1	1				
안	제 출	(42)	(42)	(40)	(2)				
	교육감	1	1	1					
	제 출	(11)	(11)	(11)					
   예 /	산·결산	1	1	1					
	L 2L	(11)	(11)	(7)	(6)				
동의	의・승인	(28)	(28)	(27)	(1)				
건	의 안	(7)	(7)	(6)	(1)				
결	의 안	(7)	(7)	(7)					
フ	타 안	4 (17)	4 (17)	4 (16)	(1)				

<sup>※ • ( )</sup>내는 제7대 의회 누계

<sup>-</sup> 의안 내용은 붙임 부록에 게재

# 2. 위원회

				심	사	• 의	결				
위원회	회부		가 결						부결	철회	계류
		계	조례	예산 결산	동의 승인	건의	결의	기타			
계	8 (129)	8 (127)	3 (55)	1 (13)	(28)	(7)	(7)	4 (17)			(2)
의회운영	(2)	(2)	(1)				(1)				
기 획	(13)	(12)	(6)		(4)	(1)		(1)			(1)
행정사회	(33)	(32)	(22)		(9)	(1)					(1)
교육환경	1 (17)	1 (17)	1 (13)		(3)			(1)			
농수산	1 (8)	1 (8)	1 (3)		(4)	(1)					
산업관광	1 (15)	1 (15)	1 (8)		(6)		(1)				
건설소방	(7)	(7)	(2)		(2)	(2)		(1)			
특 별	1 (13)	1 (13)		1 (13)							
본회의	4 (21)	4 (21)				(2)	(5)	4 (14)			

※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 IV. 민원처리

# 1. 청 원

Э Н	접	2	처 리	ションス		
구 분	계	이 월	금 회	서 리	처리중	
금 회		_				
누 계	1			1		

※ 누계는 제7대의회 실적

# 2. 진 정

가. 접 수

위원회별	계	행정	사회 문화	교통	건설	교육	경제	환경	농어업	기타
계	3			1	1			1		
/ II	(57)	(4)	(8)	(8)	(10)	(4)	(3)	(6)	(4)	(10)
의회운영										
기 획	(2)									(2)
행정사회	(6)	(3)	(2)	(1)						
교육환경	1 (10)			(1)		(4)		1 (5)		
농 수 산	(5)			(1)	(1)				(3)	
산업관광	(12)		(6)				(3)			(3)
건설소방	2 (19)	(1)		1 (5)	1 (9)			(1)	(1)	(2)
특별위원회	(3)									(3)

※ ( )안은 제7대 의원 누계

이이컨버			ション			
위원회별	계	처 리	불수리	취하	타기관양	처리중
계	5 (57)	5 (57)				
의회운영						
기 획	(2)	(2)				
행정사회	(6)	(6)				
교육환경	1 (10)	1 (10)				
농 수 산	(5)	(5)				
산업관광	2 (12)	2 (12)				
건설소방	2 (19)	2 (19)				
특별위원회	(3)	(3)				

<sup>※ ( )</sup>안은 제7대 의회 누계

# V. 본회의 보고사항

# 1.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제 출 자	의 안 명	소관위원회
(제출일)	의 안 명	(회부일)
경상북도교육감	거시보드 그 ㅇ 가 시 소기머니고 ㅁ 이 거 이 그 게 즈 게 거 그 게 이 .	교육환경
(2003. 10. 6)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3. 10. 13)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농 수 산
(2003. 10. 13)	'성'성목도시 취원인산다'급취외기 '성 옷단'성도네인	(2003. 10. 13)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	행정사회
(2003. 10. 13)	조례중개정조례안	(2003. 10. 13)
경상북도지사	2003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	각 상임위
(2003. 10. 22)	추가경정예산안	(2003. 10. 22)

# 2. 조례공포사항

이 송 일	이송처	건 명	공 포 일
2003. 10. 2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2003. 10. 20
2003. 10. 2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제2의건국범도민추진위원회 조례폐지조례	2003. 10. 20
2003. 10. 2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2003. 10.20
2003. 10. 2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	2003. 10.20
2003. 10. 2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물류정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	2003. 10.20
2003. 10. 2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	2003. 10.20

# 3. 위원회 활동사항

위 원 회	일시(기간)	장 소	활 동 내 용
농수산위원회	2003.10. 7(화) 11:00	경주엑스포 백결공연장	<ul><li>&gt;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참석</li><li>- 농특산물 홍보켐페인</li><li>- 농특산물 나눠주기 행사</li></ul>
농수산위원회	2003.10.13 ~ 10.16	전남, 전북 일원	<ul><li>타도 농정현황 비교시찰</li><li>- 농・어업 현장 견학</li><li>- 상호 의견교환 및 자료수집</li></ul>
산업관광위원회	2003.10.13 ~ 10.14	전주 일원	<ul><li>제84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임원 및 선수단 격려, 경기참관</li></ul>

# 4. 기타사항

# ㅇ 경북 여성 전통문화 한마당 개막식

일 시 : 2003. 10. 6(월) 13:30장 소 : 경주엑스포 처용마당

- 참 석 : 최원병 의장(축사)

# ㅇ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 일 시 : 2003. 10. 7(화) 11:00

- 장 소 : 경주엑스포 백결공연장

- 참 석 : 정무웅 부의장(축사)

## ㅇ 경북 명예자문관 환영행사

- 일 시 : 2003. 10. 7(화) 18:00

- 장 소 : 대구 인터불고호텔

- 참 석 : 김선종 부의장

#### ㅇ 제84회 전국체전참가 선수단 결단식

- 일 시 : 2003. 10. 8(수) 14:30

- 장 소 : 경산중고 체육관

- 참 석 : 최원병 의장(격려사)

#### ㅇ 대통령직속 지속가능 발전위원장 래방

- 기 간 : 2003. 10. 8(수) 14:30

- 장 소 : 의장실

- 참 석 : 최원병 의장

#### o 농촌 보육·정보센타 설명 및 농정토론회

- 기 간 : 2003. 10. 9(목) 14:00

- 장 소 : 농업인 회관

- 참 석 : 방대선 농수산위원장(축사)

#### ㅇ 제557돌 한글날 기념식

- 기 간 : 2003. 10. 9(목). 10:00

장소: 경주시청 강당참석: 최원병 의장

## ㅇ 수해지역 현지확인 및 위문

- 기 간 : 2003. 10. 9(목)

- 장 소 : 울진군 일원

- 참 석 : 최원병 의장

## ㅇ 2003 경상북도 인터넷새마을지도자 대회

- 기 간 : 2003.10. 9(목). 15:00

- 장 소 : 경주엑스포 처용마당

- 참 석 : 김선종 부의장(축사)

# o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

- 일 시 : 2003. 10. 10(금) 11:00

- 장 소 : 전주 코아리베라호텔

- 참 석 : 최원병 의장

#### ㅇ 제38회 전국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시상식

- 일 시 : 2003. 10. 10(금) 11:00

- 장 소 : 도청 강당

- 참 석 : 김선종 부의장(축사)

#### ㅇ 제84회 전국체전 개막식

- 기 간 : 2003. 10. 10(금). 17:00

- 장 소 : 전주 월드컵 경기장

- 참 석 : 최원병 의장

#### ㅇ 『쌀박사』 출판기념회 및 쌀소비 확대 다짐대회

- 일 시 : 2003. 10. 13(월). 11:00

- 장 소 : 농협 지역본부 회의실

- 참 석 : 최원병 의장

#### ㅇ 일본 시마네현 의원 래방

- 일 시 : 2003. 10. 13(수). 11:30

- 장 소 : 의장실

- 참 석 : 최원병 의장, 김선종 부의장, 손만덕,이종칠 의원(국제친선연맹 회장,부회장)

## ㅇ 자활자립상 심사위원회 참석

- 일 시 : 2003. 10. 15(수). 15:00

- 장 소 : 도청 제1회의실

- 참 석 : 김정자 의원

## ㅇ 제25회 경북 능금잔치 행사

- 일 자 : 2003. 10. 15(수). 10:00

- 장 소 : 경주엑스포 백결공연장

- 참 석 : 김선종 부의장

# ㅇ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관람객 150만명 돌파 기념행사

- 일 시 : 2003. 10. 15(수). 11:00

- 장 소 : 경주엑스포 정문

- 참 석 : 김선종 부의장

#### ㅇ 이북도민 경북연합회 제9회 망향제

- 일 시 : 2003. 10. 16(목). 11:30

- 장 소 : 영덕 삼사해상공원

- 참 석 : 김선종 부의장(추념사)

#### ㅇ 울릉도 남양항 기공식

- 일 시 : 2003. 10. 16(목). 15:00

- 장 소 : 울릉 남양항

- 참 석 : 정무웅 부의장

#### o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 일 시 : 2003. 10. 16(목). 11:00

- 장 소 : 충북 도의회

- 참 석 : 손규삼 운영위원장

# ㅇ 2003년도 경상북도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 일 시 : 2003. 10. 17(금). 11:00

- 장 소 : 의장실

- 참 석 : 김선종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예결특위원장

## ㅇ 제84회 전국체전 참가 경북선수단 환영식

- 일 시 : 2003.10.17(금) 15:00

- 장 소 : 도청 전정

- 참 석 : 김선종 부의장(축사)

# Ⅵ. 도정질문

## □ 제1차 본회의

## 채희영(건설소방위원회)

존경하는 최원병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근 지사와 도승회 교육감, 배석한 관계관 여러분!

루사의 피해가 아물기도 전에 태풍 매미의 겹친 피해로 기진맥진한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문경 출신 채희영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수해현장을 확인점검하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깊이 느꼈습니다. 그야말로 목불인견이었습니다. 우선 지사님께 묻습니다.

몰락되어지고 있는 농촌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멕시코 칸쿤에서 자결한 이경해 씨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머나먼 타국 땅에서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우리 농촌, 농업을 지켜야 하는 참 모습이었습니다. 농업인들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자연재해와 감당하기 어려운 농가부채와 거센 시장개방 압력에 시달리며 벼랑 끝에 내몰리 고 있습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도 지난 9월22일 우리 농업, 농촌의 현 상 태를 "한국농업의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농업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확대를 결의하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2000년 이후부터 매년 6,000톤의 중국산 찐쌀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금년 쌀생산은 지난해보다 10% 가량 줄어든 3,100만섬 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생산량은 최근 10년동안 생산량이 가장 적었던 1995년의 3,260만섬보다 160만섬 가량 적은 것이고 사상 최대 풍작을 기록했던 2001년 3,830만섬보다는 무려730만섬이나 줄어든 것입니다. 금년은 쌀 40만톤 약 280만섬을 북한에

지원하는 데다 생산량도 평년작인 3,463만섬보다 350만섬 가량 줄어들어 그동안 양정을 짓누르고 있던 과잉 재고에 대한 수급 불안은 2004년에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고율이 유엔식량 농업기구의 권장기준에 접근할 정도로 떨어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의 비중이 47%인 것을 감안한다면 농가소득 역시 금년보다 2.5%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쌀값이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쌀 수확량이 10% 줄어든다는 것은 곧 내년 농 업소득이 5% 가량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인데도 마치 넘어진 사람 뒤꼭지를 밟고 지나가는 것처럼 농가부채경감대책에서는 9조8,000억에 달하는 상호금융대체저리자금과 농업경영개선자금이 제외되었으니 몸체는 주되 뇌와 염통을 떼어버린 농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북은 웅도를 말하고 농도임을 포효하는 일상에서 실의에 빠지다 못해 자포자기하면서 한숨짓는 농업인들을 어찌할 것이며 태풍 매미로 인해 줄줄이 겹친 한많은 사연들을 어찌 달랠 것이며, 싸늘한 금년 겨울도 컨테이너 박스에서 떨며 굶주리는 우리 도민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사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농촌, 농업인을 위한다는 참여정부의 공약인 전체 농림예산의 20%를 직불예산으로 확보한다는 공약이 지켜지는지의 확인 여부와 내년 논농업직불보조금 단가를 획기적으로 높여서 망가지고 있는 농촌 농업인들을 구제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지 지사께 묻습니다.

더하여 우리 농촌, 농업인들을 실의에 빠지게 하는 것은 멕시코 칸 쿤에서 합의안 도출이 결렬되었다고 해서 도하개발 아젠다농업협상이 끝난 것은 절대 아니며 각료회의에서 제시된 초안문은 향후 협상의 골격이 될 것은 명약관화한데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농산물 개방을 막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정부나 우리 도 농산 당국이 농민을 위한다고 내놓은 정책들이 옳은 것도 없고 옳지 않은 것도 없으니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귀로듣고 눈으로 보아도 진정한 농업인을 위한 정책대안으로 받아들이기힘들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고 있으니 天下無可 無不可요, 耳聞이目見心不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이 대노한 원인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낙동강은 우리 도민들에게 삶의 터전과 풍요로움을 제공하는 반면 때로는 엄청난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번 태풍 매미 때에는 경남북 지역에 설치된 배수장 180여곳 중 제대로 가동된 것은 20% 정도였고 대부분의 배수장이 물을 빼내지 못하고 물에 잠긴 넌센스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물을 저장하는 기능을 하는 습지를 농경지로 전용하고 천연적으로 흡수방지 기능을 하는 유수지를 없애버리고 수계와 지류를 직선화하고 하천정비사업을 통하여 산골짜기 하천을 직선화하여 유속을 빠르게 했으며, 특히 본의원이 도내 수해지역 현지확인을 갔을 때는 10년이나 계속된 숲가꾸기사업으로 인한 생산산물의 적치로 산사태가 발생하고 적치물은 교량의 경관을 막아 유속을 정지시켜 제방이 붕괴되고 농경지가 매몰 유실되는 인재로 보여졌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전문가들은 강둑을 높이고 지류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습지가 파괴되고 배수시설이 현격히 부족한 것도 수해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낙동강의 순화체계를 무시한 토목공사식 의 난개발도 한몫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기한 제반 원인들로 인하여 지난해 루사 피해복구시 10조원이 투입되었고 이번 매미로 인한 피해액은 2조4,000억원에 이른다는 정부측발표가 있었습니다. 연중행사처럼 되어버린 피해복구는 땜질 식의 원상복구가 아니라 개량복구나 항구적 복구를 해야 한다는 것을 피해현장들이 적나라하게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요순 우탕시대의 치산치수를 연상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우리 강산은 벌거숭이 민둥산에 나무를 심어 산을 가꾸고 숲을 가꾸어 왔습니다. 나무들의 뿌리들은 깊고 넓게 뻗어나지 못했고 특히 석산 들에서는 표토층이 두껍지 못하여 나무들이 강풍이나 시우량에 따라 넘어지고 산사태를 유발한 것은 상대적으로 자연림에 비하여 약하다 는 것입니다.

더하여 단비현실화이전에 개설된 임도와 적치된 지장목들도 산사태의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심지어 물길로 변한 임도도 본의원은 목격하 였습니다. 우리 도의 부실한 임도, 파괴되어 복구되지 않은 임도는 얼 마나 되는지 묻습니다. 산사태로 인한 산림의 유실은 얼마나 되는지 도 지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제 산림정책 자체를 환경조림 쪽으로 전환하여 환경과 생태계도함께 보존·보호하는 정책 입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습니다. 그리하여 산을 보고 숲도 함께볼 수 있는 혜안을 도민들께 제공하여 수해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특단의 치산사업도 함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을 알고자 합니다.

인구증가와 난개발로 인한 물수요의 증가와 수질오염으로 세계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만성적인 물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도를 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연평균 강수량이 세계평균의 1.3배이지만 높은 인구밀도로 1인당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평균의 12.5%에 불과하다고 학자들은 발표하고 있습니다. 더우나 인구의 45.3%가 수도권에 집결돼 있고 연간 강수량의 66%가 여름 홍수기에 집중돼 있어 물관리가 아주 어렵게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이용 가능한 수자원이 1,500㎡에 불과해 물 부족국가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최근 35년 동안 전체용수 수요는 6.5배로서 그 중 생활용수 수요는 32배로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증가세는 20년 이상 지속될 전망이라고 학자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의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2006년부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서 연간 4억톤의 물이 부족하게 되고 2011년부터는 연간 20억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십년 동안 경제성장이라는 미명아래 물이 부족하면 댐을 만들고 택지가 부족하면 산을 헐고 바다를 매립하고 심지어 농지를 형질 변경하는 등 공급위주의 정책을 추구해 옴으로써 강과 산, 바다 어느 한 곳이 성한 곳이 없습니다. 1993년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된 이후는 토지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상수원 주변의 개발이가속화된 현실은 우리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여기에 식단의 대부분이 수질오염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식생활로 인한버리는 음식물만 식단의 24%나 되어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가 생활쓰레기의 30%에 달하고 그 양은 483만2,000톤으로써 경제적 가치만도 14조7,000억원으로 수질관리에 나쁜 영향을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4대강 수질이 다소 개선되고는 있지만 갈수기에는 여전히 3급수 수질을 보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 도민들도 물쓰듯하는 생활에서 벗어나 불편을 참으면서 절수할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이의근 지사님!

무엇보다도 사후관리에서 예방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떠할는지요? 정화시설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전환이 더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평소 소신을 가지고 있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습니다.

또한 수량과 수질을 통합 관리하는 관련기구의 일원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질관련 환경영향평가도 사업결정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공급위주의 수도행정에서 물수요 억제의 절수행정도 본의원은 필요하 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의지는 어떠한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제 달라져야 할 관광정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이 관광정책을 앞세워 굴뚝 없는 산업의 활성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세계문화엑스포가 관람객 숫자가 150만명을 돌파하였고 이 시간쯤은 더 많아졌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안동 탈춤페스티벌 등 지방 관광상품도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관광을 보고 즐기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경제산업적 측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 시각 현재 경제 중심지가 관광의 중심지가 되었지만 국제교류가 급속한 미래에는 관광의 중심지가 경제 중심지가 될 수 있다는 예견을 해 본다면 우리 도의 독특한 이미지 부각을 시킬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상품을 더 많이 개발해야 하고 지역 관광상품 개발에도 도 차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시장경제 개방으로 지구촌이 점점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모든 산업이 관광산업으로 연결된다는 전제 하에 한국적이면서도 경북적인 색깔의 자원과 문화를 가지고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관광 적자가 10억 달러를 넘어섰고 날로 그 폭이 커지고 있으며 국가정책의 근간을 세우는데 관광이 중요분야로 고려되어야 함은 불문가지로 우리 도도 또한 비중을 높여야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국제사회 협력분야에서 관광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최근한·중·일 정상회담에서도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관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지역축제나 관광상품일지라도 도 차원에서 국가별 시장선호도를 조사하여 각 지방에 맞게 반영할 필요도 느껴집니다. 눈에 띄는 큰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 전통문화 등 모든 것이 상품화될 수 있기 때문에 동북아지역에서 차별화된 매력적인 분야를 경북이개발해야 할 때입니다. 태권도 발상지, 음식, 역사유적지, 지방축제 등의 독특한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할 때인 것입니다.

최근 한국관광공사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가장 매력적인 한국의 관광상품은 중국인은 영화와 드라마를 꼽았고 일본인은 한국어 회화습득을, 미국인들은 음식을 꼽았습니다.

관광상품을 자연경관만으로 생각하는 기존 인식에서 탈피하여 국가 별로 시장 선호도를 반영한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믿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주5일시대가 도래되면 관광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인데 여가를 보고 즐기는 데만 사용하기 보다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한 지사님의 대책을 묻습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농어촌교육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99년12월 교원 정년단축 조치와 대규모 명예퇴직 급증으로 초등교사 부족사태는 최근 3~4년간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어해결책으로서 교육부가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들에게 2년간 특별연수를 시켜 초등에 임용하려는 소위 중·초등교사 임용방안을 도입하려했지만 교대생들의 집단 자퇴라는 벼랑끝 반발에 부딪쳐 이마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도지역에 3년 의무근무를 조건으로 교대에 2,500명을 특별편입생으로 교육시켜 2004년 투입 예정이라는 것을 본의원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범대학은 졸업생의 20%만 임용되는 반면교대생들은 전원이 임용되는 목적형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명예퇴직 급증 등 예상하지 못한 사태나 학급당 학생수 감축계획과 같은 정책수립 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지극히 경직된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땜질하고 메우는 졸속정책을 가지고는 초등교원 수급 불균형을 막을 수 없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는 11월 초등학교교원 임용시험을 앞두고 농어촌지역 교사들이 바다 위의 돛단배처럼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현직교사도 타 시도의임용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

에 의하면 사직 후 2년 경과 규정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경북지역 초등교사들이 100여명 타 시도로 떠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11월 타 시도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우리 도의 초등 교사는 몇 명이나 되며 이를 막을 수 있는 현명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학생과 교사수가 맞아떨어진다고 해도 농어촌 교사수급은 여전히 되풀이 되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마다 교대졸업생 중 농어촌 지역을 응시하는 사람은  $10\%\sim20\%$ 에 불과한 현실을 본의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근무수당이나 주택자금 대출 등의 혜택은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어떠한 유인책으로도 대도시에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막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교사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 현격히 다른 양식과 양심에만 호소할 수도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따라서 차제에 농어촌지역 교사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대책을 교육부가 내어놓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농어촌 교사들의 특별수상을 대폭 인상을 하든지 아니면 승진 등 인사에서 농어촌지역 근무경력을 절대 우대하거나 의무화하고 발령지 역을 선택하여 갈 수 있도록 하는 등 가능한 모든 정책을 강구하여 당장 우려되는 농어촌 지역의 교육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지책을 강구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절규합니다.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습니다.

교육부의 정책 책임자도 교육전문가들도 모두 대도시에 살면서 대도시 교육문제만 고민을 하고 해외 조기 유학이나 막을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농어촌 교육의 몰락에도 사상을 고쳐 먹을 때라고 봅니다. 그들 또한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교육감의 종합적이고 가시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장미향(기획위원회)

존경하는 김선종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의근 도지사와 도승회 교육감을 비롯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획위원회 상주시 출신의 장미향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남다른 감회를 느끼며 다소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 여름 태풍 「루사」가 할퀴고 간 상처가 치유되기도 전 올 봄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내린 잦은 비는 농작물에 각종 병충해와 저 온현상까지 겹치게 하여 유례 없는 흉작으로 우리 농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더니, 설상가상으로 추수기를 앞두고 불어닥친 태풍 「매미」는 도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상처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조속한 시일내에 완벽한 복구로 수해 재 발방지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하며, 또한 항구적인 재해예방대책과 물관리종합대책 수립에도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지금 공무원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도민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도 있고 절망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모든 것은 도민과 함께하는 공무원이 되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본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에서 단순한 문제제기나 지적보다는 생산적인 의정활동과 새로운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평소 의정활동 을 통하여 보고 느낀 몇 가지 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성농업인의 복지부문과 농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의근 지사께 묻겠습니다.

여성복지부문에 있어서 현재 농촌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참여와 역할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여성농업인이 처해 있는 여건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농림부의 여성농업인 기본통계에 의하면 2002년 통계발표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비중은 1970년 28.3%에서 2001년 현재 52.9%로 1980년대말 이후부터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농업인은 여전히 농업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업노동은 물론 가사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정당한 생산노동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농번기에 여성농업인은 하루 13시간이라는 과다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되어 있지만 남녀간 임금격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낮은소득과 힘든 농사여건, 열악한 자녀교육환경, 육아, 보육, 의료환경 등취약한 복지여건 등은 여성농업인들을 더욱 힘들고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곧 젊고 유능한 여성들의 농촌진입을 막는 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 있는 바,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농업인은 농업경영활동의 핵심인적자원임을 감안할 때 권익의 실질적 증진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본의원은 강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여성농업관련위원회의 참여비율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경상북도의 농정관련위원회의 여성참여비율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앞으로 여성농업인의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여성농업인의 조직활성화 및 사회적 지위향상을 꾀하고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해 여성농업인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경북 여성농업인의 매우 어려운 현 상황을 고려한다면 협의회가 아니라 이를 확대개편한 여성농업인정책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또한 2003년 들어 경북도정에서 여성농업인을 위한 기본사업으로 시행된 것을 보면 농업여성인센터운영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이러한 사업들은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수혜자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전체 여성농업인들에게 실절적인 권익과 복지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본의원이 농촌지역에 접하여 생활하면서 평소 느끼고 있던 농촌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농촌관광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농촌은 인구감소, 농산물가격 불안정, 농산물 시장개방과 수입 농산물의 증가로 농업기반 자체가 붕괴의 위기에 처해 있고, 농가부 채의 증가와 농촌 고령화로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에 있으며, 또한 무분별한 난개발로 농촌경관이 훼손되고 도시지역에 비해 생활 여건과 복지 인프라도 취약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관광이란 농촌은 도시민들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민박, 농산물 판매 등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 농촌활력을 되찾게 할 수있도록 농업과 관광을 접목시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통하여 농촌을 생산과 판매, 체험과 휴식이 가능한 일종의 복합상품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농촌관광의 활성화는 곧 농촌주민의 삶의 질 증대, 농촌환경의 보전, 관광객 만족 등 세 가지 목표를 균형있게 달성하는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전략입니다. 즉 농촌생활과 전통문화를 테마로 한 문화체험, 각종 공예·요리 등이 포함되는 만들기 체험, 자연관찰·생태학습을 테마로 하는 자연체험, 그리고 레포츠·건강을 위주로 한 모범체험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농촌관광은 농촌주민에게는 소득증대 뿐만 아니라 애향심을 갖게 하고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기회를 주는 동시에 도시민들에게는 자연과 사람의 접촉을 통한 인간성을 실현하는 자기실현의 여행이 될 것이며,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람과 지역이 공생하는 농촌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경상북도에서도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관광농원사업 등을 통하여 다양한 농촌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판로를 모색해 왔으나, 그 기획과 성과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본의원은 농촌관광프로그램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현실과 도시 생활의 문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라고 생각하며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테마를 선정하여 전담부서의 설치 및 관련분야의 전문가 배치를 통하여 붕괴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농촌생활문화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개발전략으로 활용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연자원 보존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를 환경과 문화의 세기라고들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조류에 부응하고 선도해 나가기 위해 경상북도에서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유교문화권을 포함한 3대 문화권 개발등을 통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남다른 노력을 경주해나가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자연자원 없이문화가 성립될 수 없고 문화의 형성 없이 자연이 가치화될 수 없기때문에 양자의 조화로운 접목에서만이 진정한 생명과 가치를 가질 수있을 것입니다. 3백만 도민이 보다 수준 높은 삶과 행복을 추구해 가야한다는 본질적인 경북 도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분명 그 양대축은 환경과 문화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경상북도는 너무 문화편중의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구심을 가지게합니다.

도정목표에도 문화에 대한 마인드는 명시되어 있으나 환경에 대한 언급은 부재한 상태입니다. 물론 경상북도는 '그린경북 건설'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국 최초로 '경북 아젠다 21' 및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는 등 발빠른 대응과 노력을 해나가고 있지만 대부분 생활환경중심과 개 발지향적인 정책으로 일관되어 있으며, 그 방향성에 있어 자연환경의 보전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어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의 생명과 직결 되는 것은 바로 자연환경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속가능한 보존정책 등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경상북도가 추진해 나가고 있는 중요한 환경정책 방향과 지사의 환경마인드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연환경에 대해서 현재 우리도가 계획하고 집행해 나가고 있는 정책들이 바람직한 자연관과 생태철학에 바탕을 두고 추진되고 있는지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간은 자연생태계의 지극히 작은 일부이며 먹이사슬을 구성하고 있는 한 생물종에 불과하며 자연생태계의 온전한 보전이란 이러한 종의 보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야생동·식물 및 위기에 처해 있는 희귀동·식물에 대한 관리와 보존대책은 그 어떤 문제보다도 시급하며 중요한 사안이라고 평소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지론이기도 합니다.

환경오염과 자연파괴로 인한 생물다양성 감소와 종보전은 1992년 리우지구정상회담 이후 가장 핵심적이고 중대한 과제로 논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나라마다 산업전략화 해나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에서도 체계적이며 항구적인 보존대책과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을 제정하여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 동·식물에 대한 보존 및 대책 등을 강구해 나가고 있으며, 경상북도에서도 이들에 대해 지정이 되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이러한 멸종위기 및 야생동·식물에 대한 보호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다원화되고 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업무가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경상북도 내에 산재해 있는 다양하고 소중한 생물자원의 연구·보존·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관장해 나갈 전담부서의 설치 및 전문가의 배치와 대학 등과 관련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의원은 평소 생활 속에서 또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관심 있게 지켜보았던 노거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거수란 수백 년, 혹은 천 년이 넘도록 천재지변 등의 파손과 전쟁, 화재, 개발행위와 같은 인위적 외압을 견디면서 우리 민족의 얼과 혼을 간직한 역사적·문화적 유산으로서 대단히 가치있는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도시화와 무분별한 국토개발, 그리고 농촌사회의 구조변화 등으로 인하여 많은 노거수들이 상실되거나 방 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의 역사적인 자연문화유산이 사라져 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노거수는 천연기념물과 보호수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리부서도 이원화되어서인지 보호수 간판이 시·군마다 다르고 주변정비의 방법도 통일되지 않아 노거수의 체계 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따라서 해당부 서에서는 보다 합리적인 지정기준을 설정하고 통합된 관리부서 및 전 문인력의 배치와 더불어 현지관리인의 전문지식 함양을 통한 천연기 념물과 보호수의 관리체계가 전문화 및 통합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 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운동과 자연 보호운동 발상지인 경상북도가 다시 한번 생명지키기운동인 자연사랑 운동을 통해서 도민규합과 애향심 고취로 대한민국을 선도해 가는 힘 있는 경북으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 니다.

다음은 대구·경북한방산업단지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4일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는 대구시와 경상북도 한방 산업공동기획단의 주관으로 삼성경제연구소의 한방육성과 관련한 연 구용역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의 주요내용은 한방의약품과 관련제품을 개발하여 세계한방시장을 선점한다는 한방의 산업화를 위해 2015년까지 연구개발과 시장개척, 시장확대 단계로 나누어 매출 2조원 목표로 기업 500개를 육성하는 것을 그 주요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고회 당일 이미 500억 규모로 경상북도와 상주시가 추진 중인 한방자원산업화단지를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현재 상주시와 시민들의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상북도는 이미 작년 7월 상주시 은척면 일 원에 한방자원산업화단지를 조성하는 입지선정결과를 발표하고 안동, 영주, 봉화, 의성 등 주변지역과 연계한 한방산업육성계획을 대구광역시 보다 앞서서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상주시에서는 이를 기초로 이미 산업화단지 예정부지 내에 한약재 전시관을 설치하였고, 한방자원산 업화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실시설계가 용역 중에 있으며, 편입부지 50여만평에 대한 감정평가와 80% 부지매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더욱 이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만 하더라도 100억원에 달하는 등 상주시와 시민들이 총력을 경주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중 간보고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왜 제외되었는지 본의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 4월18일 처음 공동기획단이 발족할 때만 해도 자연스럽게 대구지역은 대구약령시장 등 한의약 유통시장기능, 한의약 연구발전이 핵심전략이고, 경북은 상주한방단지, 안동중심의 한방바이오타운, 구미의 한방융합기술관련 연구시설, 경주의 한방테마산업 등에 중점적으로 접근하여 한의약재 생산 및 가공에 주력한다는 계획이 상호 간에 공동발전전략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미 추진 중에 있는 상주시 한방자원산업화단지를 포함하여 경상 북도의 한방산업육성계획을 대구시와의 공동계획 추진에 우리 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어 반영, 관철시켜 나갈 것인지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만일 우리 도는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대구시와의 공동추 진에 흡족할 만큼 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대구시와의 공조 체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상주시에서는 한방자원산업화단지 조성업무를 담당할 전담부서를 신설, 총력을 경주하고 있고 또한 우리 도가 이에 대한 추가 예산지원을 확대하기로 한만큼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가장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향후 한방산업화와 관련한 각종 회의 등에 상주시의 관계자 및 시·도 의원들도 참석시켜 논의를 진행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경북은 이미 우리나라 한약재 생산기지로서 연간 9,000톤 이상의 한약재를 생산하고 전국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한방산 업은 웅도 경북의 차세대 성장산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미래 지속가능한 산업인 한방산업단지 조성계획에 차질이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향후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기획단이 발족할 때 자연스러운 역할분담의 선상에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한약재 생산지인 경상북도와 유통시장인 약령시가 있는 대구시가 지역별, 분야별 네트워크화 벨트의 구축으로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가는 방향으로 매진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주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생봉사활동에 대해 도승회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학생봉사활동이란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봉사정신을 심어주고 이를 권장하는 일은 충분한 가치가 있으며, 장차 유능한 성인 자원봉사자로 키워 나가기 위한 예비 자원봉사활동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학생봉사활동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교육 그자체이며 봉사학습이라는 개념으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인성교육 차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실시되어 온 학생들의 봉사활동은 교육과정 이외에 별도의 시간과 개인이 계획한 시간을 확보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봉사활동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학생들의 봉사활동 실적이 상급학교 입학전형 자료, 취업 시 평가자료 등으로 직·간접적으로 활용되면서 학생들과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봉사활동을 일종의 의무사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더욱이 학생봉사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학생봉사활동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봉사활동과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하거나 프로그램의 부족, 활동터전의 부족, 시간 부풀리기, 허위 실적증명서 발급 등 여러 가지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형식적, 시간 채우기식의 봉사활동에 지나지 않는 이른바 점수 따기식 활동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은 부인할수 있는 실정입니다.

그 주요한 원인은 교육기관을 포함한 우리 사회가 학생봉사활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원봉사란 스스로 원해서 남을 돕는 것을 말하지만 학생봉사활동은 성인들의 자원봉사와는 달리 활동 주체가 아직 미성숙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로서 학생봉사활동은 완전한 의미의 봉사활동이라기 보다는 어디까지나 봉사활동을 통한 학습, 즉 봉사학습의 개념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본의원이 평소 나름대로 학생봉사활동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더불어 학생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사회의 기관, 단체들이 우선 사회교육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의지로 학생봉사활동의 장소로 보다 폭넓게 개방이 되어야 하며, 또한 이들이 운영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교육적인 봉사학습으로써 기능 을 다하도록 지속적인 지도, 연찬 및 협조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단위 학교별, 교육청별로 봉사활동 대상기관, 도본청의 자원봉사정책을 담당하는 부서, 관계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학 생봉사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과 지도를 담당하게 하는 학생봉사활동 협의체 구성을 제의하고 하는 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생봉사활동의 건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학교, 학부모, 지역 사회간의 삼위일체식 네트워크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학생봉사활동의 기본 시스템은 부모와 함께 참여 하는 봉사활동으로 정착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학부모가 학생봉사활동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학교 단위의 학부모지도봉사단을 결성하여 봉사활동의 프로그램 개발지도, 그리고 봉사활동확인서 발급 등 명예교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이미 충청북도의 경우 매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상북도의 경우는 그 실태가 어떠한지를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생봉사활동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봉사활동에 대한 인정과 격려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컨대 지역별, 국가 차원에서 학생봉사활동 우수기관, 단체를 비롯한 모범학생의 발굴과 표창등의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봉사활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홍보활동 강화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신문, TV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학생봉사활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사회적인 공감대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에 대한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및 민주시민의 가치를 지닌 조화로운 인성도야의 과정으로 인식될 수있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제2차 본회의

## 손만덕(행정사회위원회)

평소 존경하는 정무웅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웅도 경북의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를 쓰시는 이의근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 에서도 경북교육의 발전과 지역사회 미래를 책임을 질 인재양성을 위해 정성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승회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금번 제182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되어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작금 우리가 처한 주변 현실상황이 민생은 실종되고 오직 당리당략과 소아적 권력투쟁만을 일삼는 정치권의 불안과금년 2/4분기 국내총생산의 실질 성장률이 불과 1.9%로 국가경제는물론 지역경제가 지난 '98년 IMF 환란 이후 4년여만에 최악의 상황을맞고있는 경제적 불황, 그리고 이웃을 생각하는 전통적인 미풍양속을사라지고 오직 자기의 잇속과 욕심을 채우려는 이기주의와 도덕적 해이로 만연된 사회적 가치붕괴로 인해 우리 사회전반이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이 이와 같은 사회의 총체적인 위기를 깊이 우려하면서 평소 도정의 관심분야에 대해서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답변해 주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추석연휴 기간에 발생한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복구로 노고가 많으셨지만 국가와 사회의 혼란에 따른 위기극복과 도정의 경쟁력 제고,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경북을 만들겠다는 각오와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살리기와 농촌문제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경제동향을 살펴보면 금년 2/4분기 국내 총생산의 실질 성장률이 불과 1.9%로 1/4분기 3.7% 절반정도 수준에 머물러 실물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초래하여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가 지난 '98년

IMF 환란 이후 4년만에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경제적 불황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도내 중소기업의 육성과 기술개발,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한 전 문 쇼핑몰의 개관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지난 9월에는 실라 리안 홍보전시 판매장이 개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 상북도와 24개 실라리안 업체들이 상호 유기적 협조체제를 잘 갖추어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제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회생에 큰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기업하기가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특히 경영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경영난과 체감경기는 IMF시절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이구동성입니다. 그럼에도 은행 문턱은 영세기업들에게는 하늘처럼 높고, 돈줄은 막혀 버렸습니다. 지역경제 성장이나, 고용증대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행정기관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라리안 지정업체 외의 도내 여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운영자금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산업의 장기적인 도약의 토대가 되고 고용증대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는 국·내외 유력산업체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조건과, 그동안의 활동성과에 대해 경남도를 비롯한 타 시·도와 비교하여 밝혀 주시고, 아울러 중소기업 판매촉진을 위한 해외시장개척단활동상황과 성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농도라 일컫는 우리지역의 경제와 주민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농촌지역 경제가 20여년만에 최악의 흉년, 더욱 악화되고 있는 농가부채,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감소, 쌀과 과일을 비롯한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농업과 농촌경제는 문자그대로 황폐화되어 지금 생사의 기로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농촌문제가 가장 풀기 어려운 난제이긴 합니다만

농촌을 소생 희망이 없는 시한부 인생으로 몰아가지 마시고 농촌은 우리 생명의 근본이며, 모든 사람들의 삶의 토대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우리 도가 앞장서서 농촌경제, 농촌문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간 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농업환경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 도를 비롯한 중앙, 지방정부의 농업관련 기구와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관한 복안이나 그동안 검토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WTO, FTA협상체결 후의 농업의 전망과 대책,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한 우리 농업의 경쟁력강화 대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거나 구상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쌀 생산량 조절을 위해 3년간 농사를 짓지 않는 조건으로 1ha당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쌀생산조정제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쌀생산조정제는 올해부터 시행되었지만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도내전체 경지면적의 29만3,740ha의 1.48%인 4,300ha가 신청해서 앞으로 3년동안 휴경지로 방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먼저 쌀생산조정제도가 국가안보상으로나 정서상으로나 우리가 처한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제도임을 전제하면서 쌀생산조정제의 시행에 따라 휴경되는 땅에서 창궐할 것으로 예상되는 병해충발생과 구제책임 문제, 3년동안 농작물 경작없이 관리하지 않을 경우잡초는 물론 온갖 잡목이 크게 생장하여 인근 농토에까지 장기적으로미칠 농경지 황폐화 문제, 주변 농민들의 노동의욕 저하 등의 많은부작용이 나타날 낼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제점이 19일 MBC 9시 뉴스에 보도된 것을 볼 때 쌀생산조정제를 계속해서 시행할 것인지를 밝혀주시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도의 쌀생산조정제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서도 말씀해주시고, 특히 금년처럼 흉년이 들어 쌀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또한 예상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기후온난화 등에 따른 기후환경이 어떻게 농작물 생산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번 신청하면 3년동안 농사를 짓지 못하는 이러한 제도가 정말로 필요한지, 어떤 효과가 있을 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 석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화재 보존·보수 및 도굴·도난 방지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아 지금 경주에서는 국·내외의 큰 관심 속에 2003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열리고 있으며, 지난 10월15일에는 당초의 관람객 유치목표인 150만명을 돌파하는 등 성공적인 마무리를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98년 9월과 2000년 9월에 이어 3회째 개최 중인 이번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세계인의 문화축전으로자리매김한 것은 물론 지역문화산업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세계적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저력은 바로 경북지역이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다양한 유·무형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소중한 문화재들의 보존·보수가 미흡하거나 도난, 도굴을 당함으로써 확대재생산이 전혀 불가능한 문화재가 훼손 되거나 멸실 또는 수난을 당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도가 시행하고 있는 현재의 문화재관리 대책만으로는 원형 그대로의 문화재를 보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보다 근 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문화재 보수사업은 총 288건으로 금년 8월 현재 완료 54건, 공사 중 50건, 설계 및 발주 중 184건입니다. 이를 풀어보면 금년 4/4분기인 현시점에서 완료가 18.75%, 공사 중 17.36%, 설계 및 발주 중인 것이 무려 63.88%로 아예 문화재 보수사업은 손을 놓고 있는 듯 합니다. 조속한 예산집행을 통한 보수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하면서 연말까지 예상하는 사업진척과 금년도 도내 문화재의 도난과 도굴현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아울러

도난 · 도굴을 방지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찰 목재를 깎아 먹는 흰 개미떼의 피해는 발생한 것이 있는지 또한 문화재관리와 전통문화 보존·전승시책 수립에 절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리 도의 문화재위원 및 문화재 전문위원의 선 정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달 발생한 태풍 '매미'로 인해 경주 불국사 대웅전의 지붕기와가 날아가는 등 문화재 22건을 비롯하여 사적지 및 명승지를 포함하면 11개 시·군에서 모두 61건으 로 잠정적인 피해규모는 총 94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복구대책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정정보화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있어서 도정정보화의 제고야말로 도정의 효율성, 능률성을 가늠하는 척도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도의 정보화 구축사업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로 인정받고 있으며, 특히 농촌지역 정보화 수준은 타 자치단체 및 개발 도상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어 도정에 참여하고 있는 한사람으 로서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북의 정보화 추진전략의 목표는 과거 산업시대 잘살기 운동의 일환으로 전국에 걸쳐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개되었던 새마을 운동을 모델로 하여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새로운 잘살기 운동으로 변화시킨 인터넷 새마을운동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가 선진 정보사회를 추구하기 위해 시작한 인터넷 새마을운동을 시작한지도 벌써 2년이 경과하였으며, 인터넷 사용인구 166만명 돌파, 초고속인터넷의 전지역 개통, 그리고 PC 보급률이 51%에 달하는 등 그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도정정보화는 농·어업인들의 정보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보활용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정보 마인드를 제고시키며, 실질적으로 농·어업경영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 새마을운동, 정보화 시범마을조성 등을 제2의 잘살기 운동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궁극적으로 농·어업인들의 소 득증대와 직결되어져야만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전자 상거래형 및 정보화마을 조성 등의 구체적 실적을 밝혀 주시고, 이러한 사업들이 타 분야에 미친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부터는 인터넷 새마을운동에 대한 홍보·교육분야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외부평가를 통해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추진전략을 수립한 것이 긴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예산이 허용되면 타당성 있는 외부평가도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농촌정보화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그동안의 추진성과, 우리도의 특수시책은 무엇이었는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질문사항입니다.

첫째, 공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얼마전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간한 203개 경제·무역·사회 지표로 본 대한민국이라는 책자에 보면, 우리나라의 사교육비가 전 세계에서 1 위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지표하나만으로도 우리나라의 공교육 현 실이 어떤 수준인지를 충분하게 인식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IMF를 비롯하여 최악의 경기불황 속에서도 고액의 경비가들어가는 사교육에 기대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 속에서 학부모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감, 그리고무용론에 대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본 의원은 교육대계(敎育大計)야말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여 주는 마지막 보루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교육도 공급자인 학교·교사위주의 교육에서 수요자인 학생·학부모 위주로 그 중심이 전환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실제 교육정책 당국은 제7차 교육과정개혁이 시행·정착된다면 교육의 다양화와 수준별·단계별 교육을 지향할 수 있기 때문에 붕괴된

공교육이 정상화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낙관하였으나 제도의 시행 후실제로는 그 반대의 모순과 괴리현상들이 분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수의 교육주체들은 제7차 교육과 정에 의한 학교교육이 자기계발과 진로선택, 입시, 사교육비 절감 등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아 공교육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오히려 저하되 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본 의원은 참여정부의 새 교육 정책 제1순위가 공교육의 정상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육감의 공교육 정상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교육감께서 주창하고 계신 3대 인간성 교육내용과 교육중기발전프로젝트로 볼 수 있는 '경북교육2006'의 내용에 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허약한 현재의 교육행정체제야말로 말로는 교육백년대계를 부르짖으면서 우리 교육이 찬밥대우를 받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보는데 그야말로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 중추가 될 수 있도록 교육기관및 교육행정 종사자의 위상과 기능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당위성에 대한 교육감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교육자의 사명을 수행하고 계시는 농 어촌지역 교사들의 희생과 노고에 대한 보상은 몰론 날로 심각해져가 고 있는 교사수급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지역 교사들에 대한 과감한 법적·제도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 교사들의 타지역 임용고시 응시제한이 위헌이라는 대법 원의 판결에 따라 대도시 전출을 바라는 많은 선생님들의 동요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선생님들간의 위화감 조성, 사기저하는 물론, 교사 부족현상을 심화시켜 농촌교육의 붕괴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도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현재 농촌지역의 교사 수급 실태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5일제 근무시행에 따른 주5일제 수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5일제 근무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교육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5일제 수업이 국민적 관심대상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교육인적자원부는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시·도교육청 실정에 따라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월 1회의 주5일제 수업 우선 시행학교를 올해보다 대폭 확대하는 한편 2005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본 의원은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시행되기 위해서는 교과과정, 교원 수급 대책, 각종 교육프로그램 도입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상당할 것 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주5일제 수업이 완전히 실시되는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며, 이에 대해 경북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어떤 대비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다기보다는 이제는 우리 의회가 좀 재정립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91년 지방자치부활로 어설픈 지방자치법 때문에 4대 때는 그래도 임명제 지사를 했고, 임명제 시장·군수제도하에서 지방의회가 있었 습니다마는 이후에 이 지방자치법이 뭔가 이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간에 와서는 도의회와 광역자치단체가 어쩌면 표류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집행부를 보고 질타하고 규명하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뭔가 오월동주라고 한배를 탔다고 같이 살아가는 방향을 강구해야 됩 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 와 있느냐 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초자치단체 의 직장협의회가 행정부지사실을 점거하고 요구사항을 내놓을 정도로 이제 하향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의원들도 기초자치단체 행사장에 가 보면 우리 스스로가 많이 느낍니다, 그런 걸.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정립이 안 된 것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법에 손을 델 때 잘못 데었기 때문에 도 국회가 잘못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는데 앞으로 이 위상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지사께서는 지사협의회나 중앙부처 회의 때 어떤 방법을 강구하는 도의 기능을 제고하는 그런 역할을 한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이제 2004년4월이되면 고속전철이 개통됩니다.

되면 아마 대구공항, 포항공항, 예천공항 이제 앞으로 1,257억이라는 예산 을 들여서 생기는 울진공항이 과연 공항구실을 할 수 있을지, 안 그러면 경상북도에 얼마만한 피해가 오는지 또는 울진공항이 동북아 중심의 항공항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양양공항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의 문제, 향후대책이나 그 다음에 경상북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많은 경도대학문제입니다.

하도 두고 두고 말이 많아서 이제는 이것도 털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고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방의회 부활이후에 경상북도에서 의회에서 가장 두고 두고 후회해야될 결의안을 만들어 준 게 그 당시에 바로 예천도립전문대학입니다. 지금의 경도대학입니다. 이것은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졸속처리한 결의안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고 당의 힘을 믿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사람들의 처지는 행방불명입니다. 장래의 계획이나 운영문제도 사실상 지금 앞으로 막연한 처지에 와 있습니다.

본의원이 2000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 당시에 2대학장 서영수학장에게 질의를 할 때 교수채용문제 등등해서 분규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 때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가 된다고 하였고, 또한 본의원이 2001년12월3일 본회의장에서 그렇다면 경도대학문제를 굳이 어려운지역에 놓아두고 할 필요없이 대구인근에 제2캠퍼스를 만들어야 안되겠나 그래서 규명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것도 연구대상이었는데아직까지 소속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자그마치 400억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치적으로 봐가지고 상주, 문경, 안동, 영주 이 4개 시를 변두리에 두고 복판에 예천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인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또 앞으로향후대책은 더욱 어려워 지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정위원이 우리가 1,440명인데 딱 지금 50%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도 우리가 제고를 해야 되고 혹시나 지금 지역에서 한참 말씀이 많습니다. 아마 예천지역에는 특히 더 많습니다마는 혹시나 우리 재단 이사장 되는 도지사님과 학장과의, 요새 노무현정권이 말하는 인사의 코드가 잘

안 맞는지, 안 맞다면 빨리 털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 것이 물론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답변이 나올 수도 있 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칠곡에 있는 교육원이 설령 나중에 예천하고 바꾸어진다해도 예천에 교육원이 가고 학교가 이리 와도 됩니다. 시설은 완벽합니다, 서로가. 기숙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런 장기적인 문제도 우리가 빨리 규명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농수산물 유통관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경상북도에서 가장 고추가 우수한 지역이 영양과 청송입니다. 아마 영양의 수비초 같으면 타 시·군보다는 근당 3,000원 더 받습니다. 그런데 건고추가 과거에는 들어와 가지고 혼합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건고추를 수입해 놓으면 색깔이 틀린다 해서 지금은 물고추, 소위말하는 홍고추가 들어 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영양과 청송지역에 7~8개 지역에 건조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벌써 한 20일전의 얘기인데 시켰는데 이 문제로해서 청송지역의 농민회 회원이 그업자하고 싸움을 해 가지고 두 명이 구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추를 말려놓은 것을 보면 건조를 시켜서 딱 보니까 정말 색깔도 좋고영양의 수비초의 최우수품 하고 동급입니다. 이것은 섞어도 아무도모릅니다.

이렇게 지금 문제가 있어서 청송지역하고 영양지역에는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무슨 도에서 무슨 힘이 있습니까?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수입허가를 해 준 것이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중앙정부에 좀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느냐 하면 건고추가 들어와 가지고 청송지역에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한 15일쯤 되었는데 보관이 되어 있을 때 여기에서 벌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얘기를 했더니 얼마 전에 이것이 제가 질문서에 놓았습니다마는 도에서 청송군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내놓았습니다. 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떻느냐 하면 건고 추가 들어올 때 그 중에 알이 건고추 안에 있으면서 묻어들어와 가지고 놓아두면 거기에서 벌레가 되어 가지고 이 벌레가 고추를 먹고 삽니다, 유충 때는 그래 가지고 이 유충이 성충이 되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하면 익충이고 해충이고 다 잡아먹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얼마전에 안동대학교에 이 교수라고 이양반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 과거에 농산물유통센터 세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양반 얘기가 자기도 죄가 있다는 것이 그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때까지그러면 그 많은 충이 …(사진을 들어보이며)… 지금 벌래 때는 이렇게 먹고 살고 …(다른 사진을 들어보이며)… 그 다음에 성충이 되면이렇게 되는데 이게 도저히 우리나라의 농약에서는 아직까지 해당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앞으로 검역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스고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우리 도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지사님이, 도지사께서 우리 북부지역에 오늘 공식석상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사께서 꼭 답변해 주실 것이 우리 북부지역 11개 시·군이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 있습니다. 안동에 있습니다.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어제 그저께 영천으로 옮기게끔, 본원이 옮기게끔 결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에 있는 본원이 영천으로 옮겨가면 이제 북부지역에도 안동에 청사가 내일 모레 개청이되니까 이 청사에 충분한 시설을 넣을 수 있으니까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11개 시·군에 보건환경연구원의 하는 일이 먹는 물 검사만하고 있습니다. 먹는 물 검사만하고 있습니다. 먹는 물 검사만하고 있습니다. 먹는 물 검사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당이 있고관광지가 있고 엄청스럽게 많습니다마는 여기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식품검사분석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청사가 개청되고 또 내년도에 할 수 있는 일이 충분히되니까 또 본원도 영천으로 옮겨지면 이제는 북부지역에 지사님께서좀 선물을 하나 주어야 안 되겠나 또 당연히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주민편의나 또 도민의 건강이나 환경을 위해서도 식품분석팀을 내년부터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또 답변이 그럴 겁니다. 이것은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하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실 줄 압니다마는이 문제는 딱 부러지게 내년부터 시행하겠다 하는 답변을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무웅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이의근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미래 지역사회를 이끌어 나갈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도승회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8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는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추석 때의 태풍과 수해로 인하여 도민의 생활이 무척 어려운 처지에 있음을 감안할 때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 넉넉한 인심과 풍요로워야 할 결실의 계절임에도 사회 전 반적인 경기침체와 제14호 태풍으로 인한 흉년으로 경북 전체 도민은 지금 깊은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하루빨리 도민 전체가 일상의 평화를 찾으시기 바라면서 평소 도정 전반을 통해 관심을 가져왔던 분야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께서는 본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도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경북은 장기적인 경제불황에다 태풍 '매미'의 피해까지 겹쳐 도민생활이 무척 피폐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달 6일부터 연말까지 경북도와 23개 시·군이 참여하는 제1회 자원봉사 대축제의 개최 결정은 어려운 이웃에 온정을 줄 수 있는 계기로 대단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축제행사 기간 중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개발 공모와 자원 봉사자 대회, 자원봉사박람회 등이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자원봉사대축제 행사를 계기로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추진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현황을 보면 금년 내에 도 1 개소 및 시·군 23개소로 시·군당 1개소씩 전체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아직 도센터를 포함하여 시·군 13개소가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설치 된 도의 1개소와 시지역 2개소, 군지역 8개소를 조속히설치하시기를 촉구하면서 금년도 미설치 지역 자원봉사센터 설치의추진경과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지역 특성과 시대적 여건에 적합한 자원봉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전문가 양성 및 자원봉사활동프로그램의 지속적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자원봉사전문가 양성방안과 실적, 자원봉사프로그램의 개발계획 및 개발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의 영·유아보육시설 보유 현황은 동별 5.7개소, 읍면 6.8개소, 면별 0.8개소로 238개 전체 면단 위 지역 중 50%인 119개 지역에 영·유아 보육시설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가 없는 읍·면도 있으면 보육시설 설립 주체도 공립이 겨우 8.7%에 불과하고 90%이상이 민간 보육시설에 의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내 영아전담시설은 11개소로 이들 모두는 시지역에 위치하여 있고 2003년6월 현재 신청중이거나 신청예정인 영아전담 보육시설다섯 개소로 이 중 의성군 봉양면 1개소만이 면지역이며 장애아동 전담시설은 더욱 열악하여 7개소 모두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직장 보육시설 역시 2002년12월 현재 포항 2개소, 구미 3개소, 경산, 고령, 성주, 칠곡 각각 1개씩 총 9개소로 이마저 모두 도시 및 도시 근교에 분포되어 있어 농어촌지역 여성의 삶의 질을 저하할 뿐만 아니라 이농현상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영·유아 보육률이 시지역, 면지역, 읍지역으로 내려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광역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지역을 동일하게 지방으로 단일화시켜 놓은 현행 보육비 재정지원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지역의 보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역 및 가정의 여건을 고려한 차등보육지불제 도입이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의 공공성 및 질적 제고를 위해 공립 보육시설의 확대 방안과 학교 등 공공시설을 이용한 보육시설 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진출이 활발해져 경제활동 참여율이 무려 49.7%대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 도는 2003년7월 현재 전체 64만1,000명의 여성 경제활동 인구 중 63만명이 취업 98%의 여성취업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 수준, 승진, 보직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여성의 복지수준은 아직 미흡함으로 여성복지가 획기적으로 증대되는 정책추진 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그간 우리 도가 여성 취업대책으로 취업박람회 개최, 공 공근로사업에 여성참여 확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을 시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취업박람회의 개최실적과 성과, 공공근로사업의 여성참여 내역,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한 직업훈련 실적 및 취업알선 건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가 여성복지, 여성권익 증진, 여성단체 사업지원, 여성 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여성국제협력사업 지원 등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지난 1999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여성발전기금의 운용실태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00년에 65세이상 고령인구비율이 7.2%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오는 2019년에는 14.4%로 높아져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23.1%로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2003년 현재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11.7%로 전국 평균 8.3%를 상회하여 이미 고령화사회의 단계를 넘어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어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노인복지시설 확충, 노인취업대책 등의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 노인이 혼자 거주하는 독거노인의 가구는 전국 64만3,543가구이며 이중 경북이 7만7,413가구로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숫자입니다.

이처럼 타지역에 비해 독거노인이 많은 우리 도가 외롭고 어려운 독거노인들의 노후생활에 많은 관심을 기울려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동안 추진한 시책의 내용과 예산지원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무의탁 독거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묻기 사업에 1억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구체적인 집행 내역과 함께 향후 이러한 사업을 보완하고 보다 화대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65세인구의 약 8.3%가 치매에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인구가 증가할수록 치매노인의 수와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예측입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0년 현재 전국에서 17만에서 32만명정도로 추정되는 치매노인 인구가 2020년에는 최소 50만명에서 최대 92만명에 이를 것으로보이며 우리 경북의 경우도 지난 2001년12월 현재 벌써 2만5,000명으로추정되고 있어 오는 2020년에는 최소 3만5,000명에서 최대 6만5,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치료는 노인문제의 최대 현안이며 경북은 복지적 차원에서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도내의

노인치매 전문요양병원은 2002년도말 현재 안동, 경산 두 곳에 170병상이 확보되어 있고 금년도에 김천, 청도, 고령, 봉화 등에 210병상, 앞으로 영천, 경산, 김천에 신축 두 곳 증축 두 곳으로 550병상을 확보할 계획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치매 전문요양시설은 2002년말 현재 포항, 경주, 안동, 영주, 청도 등에 359개의 병상이 있고 금년도에 김천, 구미, 칠곡 등에 총 260개 병상이 설치 중이며 앞으로 성주에 50병상을 신축할 계획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노인성질환, 특히 치매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금년도 노인치매 전문요양병원과 노인치매 전문 요양시설의 구체적 병상 설치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병원시설 확충을 위한 인센티브는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아울러 간호도우미 자원 봉사자들에게도 도입을 비롯한 치매예방활동 및 재활지원을 위한 프로 그램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치매환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가정에 미치는 고통과 어려움은 물론 건전한 가족관계 손상 및 노동력 상실 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엄청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인성 환자 치료대책을 단지 자녀들 의 효심에만 의지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당사자와 가족 우리 사회가 당해야 하는 그 피해와 비용을 감안할 때 노인들에게 흔히 오는 당연한 질환으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노인성 치매환자 발생 예방을 위한 조기검진 체계구축, 또는 범사회적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치매전문병원에 입원가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현행 입원비가 최소 100만원에서 약간의 치료가 부과되는 경우 250만원이나 되는소득원이 있는 소수의 가정외에는 보통 엄두도 못낼 형편입니다. 때문에저소득 계층에서 치매환자가 발생하면 그 가정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정상 자녀와 떨어져 살고 있는 노인 부부, 또는 홀로 지내시는 노인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안타까운 일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높은 치료비뿐 아니라 노인성 치매는 치료가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당장 생명에 지장이 있는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왠만한 가정은 입원치료보다 자가치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성 전문병원에 대한 국비, 지방비 지원예산 내용을 밝혀주시고 치료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사항을 교육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고교평준화 추진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현재 경북 지역 교육문제의 최대 현안은 고교평준화 추진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9일 교육인적자원부는 고교평준화 실시지역 지정권한을 시·도교육청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전에 노무현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자 시절 대구·경북지방분권 토론회에 참석하여 고교평준화 결정여부를 지방정부로 이양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평준화 지역인 경북지역 평준화 추진에 대한 찬반논란이 가열되고 있어 조기에 지역교육계의 혼란을 막고 안정된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고교평준화 추진에 대한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과 결단 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포항시의 경우 포항시 고교평준화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고교서열화에 따른 학생, 학부모, 학교간의 위화감 조성, 사교육비의 증대 등 학교 교육의 폐단 해소를 명분으로 고교평준화 도입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고교평준화를 반대하는 학부형 등이 중심이되어 포항지역 고교평준화 반대 범시민교육협의회를 결성하고 학력의하향평준화, 빈부격차에 따른 학력 격차, 우수인재의 역외 유출 등을이유로 고교평준화 추진을 적극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지역교육의 쟁점 현안인 고교평준화 추진문제에 대하여 도교육청은 어떻게 대처하실 의향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교육인적자원부의 고교평준화 실시지역 지정권한 이양 발표 후 도교육감은 이 문제에 대하여 이미 검토에 들어갔으며 결정은 최소한 2년이상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단계에서의 연구성과는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수준별 교육과정이 도입되어 학생수준에서의 적절한 교육이 실시되면 교육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사교육비가 경감될 것이라는 교육당국의 예측은 빗나가고 입시과열과 대학서열화로 오히려 새로운 우열화 현 상을 초래하여 사교육비 증가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본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장기적 경기침체와 경제불황으로 가계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소비가 위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사교육비만큼은 1년새 42%나 급증해 가계지출의 부실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내 총생산에서 교육에 대한 지출이 6.8%나 차 치해 23개 OECD국가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 하고 효율성 및 경쟁력은 꼴찌인 23위인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사교육비의 과도한 증대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는 가계 파산과 노년빈곤을 불러오고 지역 및 국가 경제적으로는 소비위축에 따른 경기침체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비 절감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노무현대통령도 연말까지 획기적인 사교육비 경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한 바 있으며 최근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여 그 내용이 언론 등에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몸과 마음을 멍들게 하고 있는 사교육비가 가정경제 및 국가 백년대계를 위협하는 사회문제로서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이 르렀는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번 학교교육개발원의 사교육비 경감방안에 대해서도 교육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전문가 및 학부모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차원에서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은 사교육비의 경감은 공교육의 정상화에 그 해답이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Ⅶ. 5분자유발언

#### □ 제4차 본회의

### 김정기(농수산위원회)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원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두 가지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큰 목소리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작은 소리로 말씀을 드려도 회의록에 잘 기재되리라고 보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알아들으시기 때문에 작은 목소리로 말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한다고 해서 회의록에 고딕체로 굵게 써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서면질문에 대한 부실한 답변에 대하여 정상적인 답변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의회와 집행부는 동반자 관계"라고들 합니다. 옳은 말씀이죠. 그런데 경상북도의 의회와 집행부의 작금의 행태를 보면 비판과 견제를 통한 동반자 관계인지 주종 관계인지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관분립형 지자체에서 금기시 되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가 주종관계로 희석되거나 변질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이 의정활동상 의문점이 있어 서면질문을 하였으면 성실한 답변을 주는 것이 법규 이전에 동반자에 대한 도리 내지는 배려가 아니겠습니까?

본의원이 지난 5월, 경상북도 실업팀을 비롯한 체육회의 선수·임원 및 예산집행 내역을 알고자 서면질문하였으나 선수·임원의 신원에 대한 내용만 내놓고 돈 쓴 내역을 아직까지 제출치 않고 있다는 점입 니다.

그동안 본의원은 본의원의 소속 농수산 전문위원실을 통하여 여러

차례 독촉을 하였으나 다른 경로를 통하여 돌아오는 말은 돈 쓴 내역이 공개되면 물의가 야기될 수 있다며 못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지원받은 예산집행에 있어 무슨 숨길 일이 많고 중대한지 모르겠으나 도민의 대표인 의원은 알면 물의가 일어나고 관계자나 공무원만 알고 있어야된다는 규정이라도 있다는 논리인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도민의 혈세를 어떻게 썼는지 도의원은 알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답변을 못하겠다는 것은 의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도민을 무시하는 독선행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경상북도의 체육진흥사업의 총예산은 186억8,116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해서 22% 증액되었습니다. 농수산개발비 9% 증액에 비하면 놀라운 증가폭인 것입니다.

본의원은 집행부의 입장을 고려하여 서면질문하였으나 이렇게 도민과 의회를 무시하면 본회의장에서 공개답변을 구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인근 모 광역시에서는 체육회 관계 일로 하여 조사특위가 가동 중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거부하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 의회에서 도 행정사무의 조사권을 발동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루 이 틀의 행정사무감사로써 자칫 잘못된 부분에 대한 면죄부만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사특위를 가동하여 심도 있는 조명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 겠습니다.

두 번째 사안으로서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한 것입니다.

본의원은 지난번 예결위 활동을 통하여 여러 차례 비판한 바 있습니다. 지난 세 차례에 걸친 행사에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총 1,000억에 가까운 돈이 투입되었으나 의회는 감사 한번 제대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을 만들어 그 경영을 분리한다고 했으나 해마다 경상북도 는 재단의 기금 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예 산과 행정력의 집중은 실로 우려할 수준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농촌이 죽어가고 있고 지역경제가 시들어가고 있고 사회가 이념 갈

등으로 양분화되어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고 있어도 우리 경상 북도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원하는 대구시와의 통합문제, 아니면 도청이전 문제는 행방불명된 지 이미 오래된 것 같습니다.

문화엑스포를 바라는 사람도 없고 돌아오길 기다리는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문화엑스포에 집착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도민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를 권력을 쥔 관에서 주도하여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여 창달할 수 있다면 모르되 적어도 관에서 주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권력 앞에서 문화는 이미 본래의 모습에서 행정편의대로 변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그동안 1,000억에 가까운 도민의 혈세를 쓰도록 승인만 해 줬지 그 후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감사나 조사를 심도 있게 해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감사 및 조사 대상 규정에 재단법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는 해석이 그 탓이었습니다. 법령에 금지된 조항이 없으면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이때, 많은 우리 도민의 혈세가 투입된 도 자체 사업이므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사 및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감사·조사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것은 의회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조 속히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여 도민들의 궁금증과 의문사항들을 상 세하게 밝혀서 이 자리에서 보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산업관광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거대한 공룡 같은 경주엑스포, 이 역시 하루 이틀의 감사로 그 실체 를 파악할 수 없는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본의원의 의견으로는 산업 관광위원회가 주축이 되고 관심 있는 몇 분 의원을 동참시켜서 특위 를 가동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자치시대에 들어와서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그동안 교육 문제, 지역경제 문제, 환경 문제, 복지 문제 등은 뒤로 돌리고 돈만 퍼부으면 겉모습을 화려하게 드러내고 주민들의 비판적 이성을 마비시키는 문화·체육의 제전과 각종 전시성·선심성 행정에 치중하는 행태가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각급 의회가 있으면서 무지막지한돈이 드는 잔치성 행사나, 전시성 사업이 용인된다는 것 그 자체가주민들로부터 의회가 비판받는 원인이 되고 주종관계처럼 보일 수 있다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집행부 어느 건물에나 걸려있음직한 현수막이 의회 청사에 큼직하게 걸려있는 것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입니다.

행정관료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의회가 변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숨기고 감추고 합니까?

집행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11월10일까지 경상북도 소속팀과 체육회 산하 각 경기연맹별, 생활체육협의회까지 예산집행 내역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경주문화엑스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 발 의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 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 록

○ 조 례 안 : 3건

ㅇ 예 산 안 : 1건

ㅇ 행정사무감사계획 총람

### □ 조 례 안 : 3건

-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3. 11. 4

경상북도조례 제 호

###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5,401명(한시정원 7명 포함)"을 "5,404명(한시정원 10명 포함)"으로 하고, 동조 제2호중 "5,387명(한시정원 7명 포함)"을 "5,390명 (한시정원 10명 포함)"으로 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한시정원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의 개정으로 증원되는 정원 3명(지방 교육행정혁신 관리팀 인력)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생략)	제1조(현행과 같음)
제2조(정원의 총수)경상북도교육청에	제2조(정원의 총수)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5,401명(한시정원 7명 포함)</u> 으로	<u>5,404명(한시정원 10명 포함)</u>
그 내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	2
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 : <u>5,387명(한시정원 7명</u>	: <u>5,390명(한시정원10명</u>
<u>포함)</u>	<u>포함)</u>
제3조 (생략)	제3조 (현행과 같음)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 <u>5,387명(한시정원 7명포함)</u>	2

경상북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3. 11. 4

경상북도조례 제 호

### 경상북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안관리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 변경에 관한 사항
  - 2. 기타 도지사가 연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
- 제3조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농수산국장이 된다
  - ③당연직 위원은 새마을자원봉사과장, 관광진흥과장, 환경관리과장, 산림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된다
    - ④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다.
      - 1. 연안관리 및 환경분야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 2. 어업인 단체 또는 환경관련 시민단체에 종사하는 자
      - 3. 연안 시·군 지역을 선거구로 하는 도의원
- 제4조 (임기) ①도의회 의원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②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 (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 (간사) ①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양수산과장이 된다.
  -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의안의 작성, 회의진행, 회의록 작성 보관, 기타 심의회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 제8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 (수당 등) 심의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 (보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상북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수정내용

조 례 안	수 정 안	비고
제4조(임기)①도의회 의원과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 임자가 위촉될 때 <u>가지</u> 계속 그 직무 를 <u>수행한다</u> .	제4조(임기)①좌동 ②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 <u>까</u> 지 계속 그 직무를 <u>수행 할</u> 수 있다.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3. 11. 4

경상북도조례 제 호

###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내지 제12조"를 "제11조 내지 제14조"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조(시설물의 관리위탁)①도지사는 공유재산중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시설물의 관리· 운영을 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 ②지원센터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시설물의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센터에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③기타 시설물의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조(업무의 위탁)①도지사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센터에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 ~제10조(생략)	제11조~제14조(현행과 같음)
<u>제9조 ~제10조(생략)</u> <u>〈신설〉</u> <u>〈신설〉</u>	제11조~제14조(현행과 같음) 제9조(시설물의 관리위탁)①도지사는 공유재산중 중소기업지원을 위한시설물의 관리 운영을 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②지원센터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시설물의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센터에 운영경비를 보조할수 있다. ③기타 시설물의 위탁운영에 관한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0조(업무의 위탁)①도지사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경우에는 지원센터에 중소기업지원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에관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예 산 안 : 1건

○ 2003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2003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보고서

### I. 제 안 자 : 경상북도지사

### Ⅱ.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3. 10. 30

나. 회부일자 : 2003. 10. 30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03.10.31,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Ⅲ.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경상북도 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 Ⅵ.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규모
 (가) 총규모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정 예산액	증(△)감	증 감 비 율
계	3,565,709,689	2,732,609,053	833,100,636	30.5%
일 반 회 계	3,074,313,136	2,248,560,000	825,753,136	36.7%
특 별 회 계	491,396,553	484,049,053	7,347,500	1.5%
의료급여기금운영	193,313,435	189,987,935	3,325,500	1.8%
치 수 사 업	30,136,000	26,114,000	4,022,000	15.4%
경도대학운영	6,614,000	6,614,000	_	0.0%
광역교통시설	7,522,118	7,522,118	_	0.0%
지역개발기금운영	253,811,000	253,811,000	_	0.0%

## (나)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 비율	기정예산액	구성 비율	증(△)감	증감 비율
합 계	3,565,709,689	100.0	2,732,609,053	100.0	833,100,636	30.5
지 방 세 수 입	520,000,000	14.6	520,000,000	19.0	_	0.0
세 외 수 입	334,652,220	9.4	331,490,720	12.1	3,161,500	1.0
경상적세외수입	65,410,362	1.8	65,410,362	2.4	_	0.0
임시적세외수입	269,241,858	7.6	266,080,358	9.7	3,161,500	1.2
지 방 교 부 세	415,850,618	11.7	413,747,618	15.2	2,103,000	0.5
지 방 양 여 금	270,311,552	7.6	270,311,552	9.9	-	0.0
보 조 금	1,859,895,299	52.1	1,072,059,163	39.2	787,836,136	73.5
지 방 채	165,000,000	4.6	125,000,000	4.6	40,000,000	32.0
경 상 예 산	218,087,268	6.1	214,686,768	7.9	3,400,500	1.6
인 건 비	108,344,304	3.0	108,344,304	4.0	_	0.0
경 상 적 경 비	109,742,964	3.1	106,342,464	3.9	3,400,500	3.2
사 업 예 산	2,832,538,299	79.4	1,998,825,920	73.1	833,712,380	41.7
보 조 사 업	2,481,393,000	69.6	1,654,839,893	60.5	826,553,107	49.9
자 체 사 업	351,145,299	9.8	343,986,027	12.6	7,159,272	2.1
채 무 상 환	118,137,945	3.3	118,137,945	4.3	-	0.0
예 비 비 등	396,946,177	11.2	400,958,420	14.7	△4,012,243	△1.0

## 2. 일반회계

## ○ 세입·세출예산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 비율	기정예산액	구성 비율	증(△)감	증감 비율
	합 계	3,074,313,136	100.0	2,248,560,000	100.0	825,753,136	36.7
	지 방 세 수 입	520,000,000	16.9	520,000,000	23.1	_	0.0
	세 외 수 입	95,183,115	3.1	95,183,115	4.2	_	0.0
세	경상적세외수입	23,709,264	0.8	23,709,264	1.1	-	0.0
	임시적세외수입	71,473,851	2.3	71,473,851	3.1	_	0.0
입	지 방 교 부 세	415,850,618	13.5	413,747,618	18.4	2,103,000	0.5
	지 방 양 여 금	270,311,552	8.8	270,311,552	12.0	_	0.0
	보 조 금	1,697,967,851	55.3	914,317,715	40.7	783,650,136	85.7
	지 방 채	75,000,000	2.4	35,000,000	1.6	40,000,000	114.3
	경 상 예 산	209,990,108	6.9	209,915,108	9.3	75,000	0.0
	인 건 비	106,899,451	3.5	106,899,451	4.8	_	0.0
세	경상적경비	103,090,657	3.4	103,015,657	4.5	75,000	0.1
	사 업 예 산	2,479,335,692	80.6	1,649,645,313	73.4	829,690,379	50.3
	보 조 사 업	2,281,750,165	74.2	1,459,219,058	64.9	822,531,107	56.4
尧	자 체 사 업	197,585,527	6.4	190,426,255	8.5	7,159,272	3.8
	채 무 상 환	38,073,945	1.2	38,073,945	1.7	_	0.0
	예 비 비 등	346,913,391	11.3	350,925,634	15.6	△4,012,243	△1.1

## 3. 특별회계

## ○ 세입·세출예산총괄표

(단위 : 천원)

	1						
	구 분	예 산 액	구성 비율	기정예산액	구성 비율	증(△)감	증감 비율
	합 계	491,396,553	1000	484,049,053	100.0	7,347,500	1.5
	세 외 수 입	239,469,105	48.7	236,307,605	48.8	3,161,500	1.3
세	경상적세외수입	41,701,098	8.5	41,701,098	8.6	-	0.0
	임시적세외수입	197,768,007	40.2	194,606,507	40.2	3,161,500	1.6
입	보 조 금	161,927,448	33.0	157,741,448	32.6	4,186,000	2.7
	지 방 채	90,000,000	18.3	90,000,000	18.6	-	0.0
	경 상 예 산	8,097,160	1.6	4,771,660	1.0	3,325,500	69.7
	인 건 비	1,444,853	0.3	1,444,853	0.3	_	0.0
세	경 상 적 경 비	6,652,307	1.3	3,326,807	0.7	3,325,500	100
	사 업 예 산	353,202,607	71.9	349,180,607	72.2	4,022,000	1.2
	보 조 사 업	199,642,835	40.6	195,620,835	40.4	4,022,000	2.1
き	자 체 사 업	153,559,772	31.2	153,559,772	31.8	-	0.0
	채 무 상 환	80,064,000	16.3	80,064,000	16.5	-	0.0
	예 비 비 등	50,032,786	10.2	50,032,786	10.3	-	0.0

# 4. 지 방 채 발 행 계 획

(단위:천원)

						(단위:선원)
사 업 명	사 업 량	기 채 선	발 행 액	발	행 조	: 건
∧ н о	\\ H \(\text{\text{0}}\)	기세리		이 율	상환기간	상환재원
계	1건		40, 000, 000			
태풍 "매미" 피 해 복 구	공 시 구	경 상 북 가 발 기 금	40,000,000	3.5%	5년 거치 10년 균분 상 환	도

## V.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

ㅇ 별도 배부 유인물 내용과 같음.

## VI. 검토의견

## 1. 총 괄

먼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기정예산 2조 7,326억 9백만원보다 8,331억원 (30.5%)이 증액된 3조 5,657억 1천만원임.

#### ○ 이를 회계별로 보면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조 2,485억 6천만원 보다 8,257억5천 3백만원(36.7%)이 증액된 3조 743억 1천 3백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840억 4천 9백만원보다 73억 4천 8백만원(1.5%)이 증액된 4,913억 9천 7백만원임.

### ○ 세입예산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8,258억원으로서

- 지방교부세 21억원과
- 국고보조금 7,837억원
- 지방채 400억원이 증액되었음.

- 그리고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재원은 특정재원인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그리고 지방채인 지역개발기금 등으로서
  - 국고보조사업비 8,228억원,
  - 교부세사업비 19억원,
  - 도비사업비 11억원 등을 편성하였음
-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용은
  -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의료급여진료비 국비 25억원 추가지원에 따라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하여 33억원을 계상하고

-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중앙지원금 16억원과 수자원공사 부담금 24억원 등 40억원을 대주변지역 정비사업비로 전액 계상하였음

## 2. 상임위원회 주요 검토사항

#### 기획위원회

○ '21세기신경북비전 2차수정 학술용역비' 1억원을 감액한 것은 신국토관리전략이 2004년 1월에 완성될 계획에 따른 것임

- 2003년도 지역정보화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시도별 특별 교부세 재원으로 '지역정보화사업추진' 및 '지방행정 정보망이중화 체계구축'을 위해 계상한 것으로 판단됨
- 예비비는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 긴급복구비 지원을 위해 감액한 것으로 사료됨.

#### 행정사회위원회

- 태풍 '매미' 피해로 소규모시설물과 공공청사를 긴급히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세입·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은 대체적으로 적정함.
- 그러나 금년도 소규모시설 피해복구비중에서 도비부담사업비 49억 5천 9백만원 부족분을 금번 추경에 미반영 하였는데 그에 따른 주민불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태풍과 호우에 취약한 소규모시설물에 대한 항구적인 안전 관리대책을 강구하여 해마다 되풀이 되는 피해규모를 최소화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 교육환경위원회

○ 세입예산은 국고 추가지원 기준이 정한 시·군별 인구 및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 지수에 의해 계상되는 것으로 세입예산 편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상수도시설 피해는 18개 시·군 151개 취·정수장과 간이상수도 시설로써 주민의 식수공급 시설이 근본적으로 취약함을 드러낸 것으로 이번 태풍 피해를 계기로 항구적인 재해방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수해는 지난해 태풍 "루사"에 이어 금년 태풍 "매미"로 인해 같은 장소에서 수해피해(10억여원)가 재발한 것은 재해에 대한 안일한 대처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향후 대비책으로 수해방지 차수막을 설치하는 등 집중호우나 태풍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안전한 대비책 마련을 위해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농수산위원회

○ 갑작스런 집중호우와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지원된 중앙지원사업비와 이에 따른 도비 부담분을 반영한 것으로서 피해를 입고 실의에 빠진 농어업인들을 위해 사용 되는 중요한 예산인 점을 감안, 늦은 감은 있지만 예산편성 자체에는 문제점이 없음.

- 수해복구를 위한 중요한 예산이 수재민들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시행후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겠으며 신속한 예산집행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 뿐만 아니라 철저한 피해조사를 통하여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이 조사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피해조사에 만전을기함은 물론, 각종 재해의 예방과 재해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항구적인 예방대책도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됨.

#### 산업관광위원회

- 경제통상실 소관
  - 중앙에서 지원되는 국비사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점포개축, 하수구정비 등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36억 7천 3백만원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기획단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15억 8천만원을 계상
  - 자가용 증가 등으로 버스업계의 경영난 악화에 따른 재정 지원금이 증가됨에 따라 버스업계의 경영실태에 관한 정확한 경영분석을 위하여 용역비 1억원 계상,

• 이번 추경예산은 대부분 중앙지원금과 태풍피해 복구를 위하여 긴급히 편성한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시기적으로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

####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의 대부분이 태풍피해 복구사업비임을 감안할 때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빠른 시일내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임.

## 건설소방위원회

- 금번 추경은 집중호우와 태풍 '매미'로 실의에 빠진 수재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공공시설물 조기복구를 통하여 도민의생활불편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시의 적절하고, 바람직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되며
- 다만 지방채 증가율 32%는 도 전체예산의 증가율 30.5%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해피해복구에 따른 중앙 지원금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됨.

- 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에 비추어 볼 때, 지방채무 증가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가일층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금번 추경예산이 재해복구는 물론 재해취약시설의 체계적 정비와 재난·재해 종합대응체제 확립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3. 종합 검토의견

- 이번 추경예산안은 집중호우 및 태풍 '매미'등 피해복구비 반영을 원칙으로 하며
- ◈ 국고예산지원 전액을 반영하고 도비부담금은 금년내 시행 해야할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 ◈ 제1회 추경이후 추경성립전 사용경비 전액을 정리하고 불가피한 수요액만 편성했다고 사료됨.

#### [세입부문]

○ 세입예산은 집중호우 및 태풍 '매미' 피해 응급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9억원 등 21억원의 지방교부세와 태풍피해 복구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7,837억원을 계상하였고

- 금년도에 시행할 수해복구비 중 도비부담금 440억원에 대하여는 지방채 400억원 발행과 예비비에서 40억원을 충당하여 편성하였음.
- 우리도가 2003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은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되며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 연말까지 중앙지원금을 더 받기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관련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판단됨.

#### [세출부문]

- 세출예산은 집중호우와 태풍 '매미' 피해복구를 위해
  - 주택복구사업비 80억원
  - 지방하천 및 소하천 복구비 3,109억원
  - 도로 복구비 1.268억워
  - 농경지와 사방 임도시설복구비 578억원 등 8,099억원을 계상하고
  -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과 농업기반조성 용수개발사업을 포함한 정부지원사업 등에 159억원을 계상하여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했다고 사료되며

- 특히, 지방교부세 21억원, 국고보조금 7,837억원 등 많은 중앙지원금이 우리도에 배정된 것은 실국별 관계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고 판단됨.
- 매년 반복되는 태풍피해에 미리 대비하기 위하여는 중앙 계획이 빨리 확정·시달되어 도로, 교통, 치수, 태풍피해 복구사업 등 추경예산을 앞당겨 편성, 도민의 재산피해의 최소화와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어야 할 것임.
- 그리고 금번 추경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국도비보조사업과 당면 현안사업은 공기부족 등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철저히 검토해서 시행해야 할 것임.

Ⅶ. 질의 및 답변요지 : 특이사항 없음

Ⅷ.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Ⅸ. 심사결과 : 원안가결

X. 소수의견의 요지 : 특이사항 없음

XI.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 행정사무감사계획 총람:1건
  -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 총람

# 행정사무감사계획 총람

- 1. 감사대상
- 가. 대상기관
- 나. 대상사무
- 다. 제출서류
- 2. 감사위원회 편성
- 3. 위원회별 감사일정
- 4. 감사요령 및 협조사항
  - 가. 감사진행순서
  - 나. 현지확인 협조
  - 다. 감사실시결과보고 협조
- 5. 증인출석 요구

행정사무감사계획 총람

## 1. 감사대상

## 가. 대상기관

〈경상북도〉

구 분		감 사 대	상 기 관	현 지 확 인
위원회별	계	본 청	작가관 사업소 및 기타	면 시 확 인
계	31	11	20	20
의회운영	1		○의회사무처 (1)	
기 획	8	○기획관리실 ○공 보 관 실 ○감 사 관 실 (3)	○ 공무원교육원 ○ 포항의 료 원 ○ 김천의 료 원 ○ 안동의 료 원 ○ 경북개발공사 (5)	
<b>가</b> 치행정	4	○ 자치행정국 ○ 사회복지여성국 (2)	○ 경도대학 ○ 자연환경연수원 (2)	○지역개발사업(2개소) ○사회복지시설(2개소) (4)
교육환경	4	○보건환경산림국 (1)	<ul> <li>보건환경연구원(지소포함)</li> <li>산림자원종합개발시업소 (지소포함)</li> <li>팔공산도립공원관라시무소 (3)</li> </ul>	

농 수 산	2	○ 농수산국(사업소포함) (1)	○ 농업기술원 및 하부조직 (1)	○ 축산기술연구소 ○ 가축위생시험소(서부지소) ○ 생물자원연구소 ○ 청도복숭아시험장 (4)
산업관광	5	○경 제 통 상 실 ○문화체육관광국 (2)	○ 경주세계문화엑스포 ○ 경상북도체육회 ○ 경북도생활체육협의회 (3)	○운수연수원(구미) ○경북도청소년수련관 (김천아포) ○한국국학진흥원(안동)
건설소방	7	○건설도시국 ○소방본부(소방서포함) (2)	<ul> <li>○ 종합건설시업소 (북부지소포함)</li> <li>○ 경주소방서</li> <li>○ 김천소방서</li> <li>○ 영주소방서</li> <li>○ 성주소방서</li> <li>(5)</li> </ul>	○ 부계 ~ 도계간도로공사 ○ 영주 ~ 순흥간도로공사 ○ 태풍「루사」 피해복구 현장(김천구성외 5개면) ○ 효령~신령간재포장사업 (9)

## 〈경상북도 교육청〉

구 분		감 사 대	상 기 관	현 지 확 이
위원회별	계	본 청	하 급 기 관	현 지 확 인
계	21	10	11	
교육환경	21	○ 교육국, 기획관리국 ○ 교육과학연구원등 8개 직속기관 (10)		

#### 나. 대상 사무

- (1)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
  -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한 경상북도 관할 구역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경상북도에 속하는 사무
  - 지방자치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 지사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등

단, 위인받은 국가사무중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는 제인

#### (2) 주요 감사사항

구 분	감사대상기관별 주요 감사사항
의회운영 위 원 회	①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② 2003년도 예산집행 현황 ③ 2004년도 예산안 심의자료수집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사항 ④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하여 요구하는 사항
기 획 위 원 회	① 주요시책업무 추진사항 ② 2002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 ③ 부문별 주요업무 추진사항 ④ 2003년도 예산집행 상황 ⑤ 2004년도 예산심의 자료수집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 ⑥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자치행정 위 원 회	① 2002, 2003년도 주요시책업무 추진상황 및 실적 ② 2002, 2003년도 세입 및 예산집행 현황 ③ 2004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 ④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⑤ 소관부서의 주요 당면 현안사항 ⑥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구 분	감사대상기관별 주요 감사사항
교육사회 위 원 회	《경상북도》 ① 2003년도 주요시책업무 추진현황 및 실적 ② 2003년도 예산집행 현황 ③ 2004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④ 2002∼2003년도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과 조치결과 ⑤ 2003년도 민원처리현황 ⑥ 소관부서의 주요 당면 현안사항 ⑦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경상북도교육청》 ① 소규모학교 통ㆍ폐합추진현황과 향후계획 및 폐교활용 대책 ② 사학지원, 정보화사업, 교사수급문제 전반 ③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농 수 산 위 원 회	① 2003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② 2003년도 예산집행 사항 및 미집행 사항 ③ 2004년도 예산안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 ④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산업관광 위 원 회	① 주요시책의 기획 및 추진사항 ② 주요사업의 추진사항 및 실적 ③ 2003년 10월말까지 예산집행 사항 ④ 2004년도 예산안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 ⑤ 경제통상실 및 문화체육관광국의 당면 현안사항 ⑥ 2003년도 10월말까지 민원처리 사항 ⑦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하는 사항
건 설 위 원 회	<ol> <li>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li> <li>2003년도 예산집행상황</li> <li>2003년도 추경 및 2004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li> <li>4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여 요구하는 사항</li> </ol>

## 다. 제출할 서류

- (1) 업무보고서
- (2) 감사자료

## 〈경상북도 해당 자료〉

감사위원회	부 서 별	공통사항	부서 개별 요구사항	비고
합	계	95	847	
의회운영	소 계		6	
	소 계	11	162	
	공 보 관 실		11	
	감 사 관 실		22	
기 획	기 획 관 리 실	11	65	
	공무원 교육원	11	18	
	지 방 의 료 원		36	
	경북 개발 공사		10	
	소 계	20	227	
	자 치 행 정 국		121	
행정사회	사회복지여성국	20	57	
	경 도 대 학	20	33	
	자연환경연수원		16	
	소 계	10	44	
	보건환경산림국	10	27	
교육환경	보건환경연구원	10	8	
	산림환경연구소		4	
	팔공산도립공원 관 리 사 무 소		5	

감사위원회	부 서 별	공통사항	부서개별 요구사항	비고
	소 계	15	164	
농 수 산	농 수 산 국	15	108	
	농 업 기 술 원	10	56	
	소 계	10	92	
धे की जी जी	경제통상실		41	
산 업 관 광	문화체육관광국	10	41	
	경주세계문화엑스포		10	
	소 계	29	152	
건 설 소 방	건설도시국	18	83	
[신 결 소 방	종합건설사업소		21	
	소 방 본 부	11	48	

### 〈경상북도교육청 해당 자료〉

감사위원회	부 서별	계	공통사항	부서 개별 요구사항	비고
	소 계	131	12	119	
교육환경	본청(직속기관)	59	5	54	
	시군교육청	72	7	65	

## ※ 감사자료 목록은 위원회별 감사계획서에 덧붙임

#### (3) 작성방법

- 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현지확인, 서류확인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므로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에 의거 수감준비를 하여야 함.
-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는 <u>2003.10.30 현재를 기준으로</u> <u>작성하여 실·국 단위로 편철후 2003.11. 10(월)까지 소관상임위로</u>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 다만, 작성기준일을 따로 지정하였거나 10월30일 현재로 작성이 곤란한 자료는 작성기준일을 별도로 표시를 요함
- 제출되는 감사자료의 규격은 A4 크기로 하고, 위원회별 20부씩 배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후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도 동일 방법임.
- ㅇ 감사대상 기관별로 「업무보고서」와 「감사자료」를 별책 작성
  - · 「업무보고」에 포함될 도정보고 내용은 감사대상 기관별로
    -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 2002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내역
    - 기타 특수시책 추진현황 등을 기본으로 "위원회별 주요감사사항"의 목록을 포함하여 작성
  - · 감사자료는 각 상임위원회별 자료요구 목록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타부서 소관은 후단에 포함.

## 2. 감사위원회 편성

#### 가. 의회운영위원회

ㅇ 감사위원장 : 손규삼 의회운영위원장

감사 위원: 방유봉, 김석호, 김순견, 김정기, 김정자, 박경동,
 윤경희, 이현준, 장하숙, 정상진, 한혜련, 황상조의원

- 사무보조(의회 직원)
  - 전문위원 주근호, 행정주사보 정병령, 속기사

#### 나. 기획위원회

ㅇ 감사위원장 : 박성만 기획위원장

○ 감사 위원: 장하숙, 권경호, 김선종, 박경동, 박두필, 방유봉, 손규삼, 장미향의원

- 사무보조(의회 직원)
  - 전문위원 김승태, 행정주사 이상인, 행정주사보 채희경, 속기사

#### 다. 행정사회위원회

ㅇ 감사위원장 : 김희문 행정사회위원장

감사 위원: 이현준, 김정자, 나종택, 손만덕, 우성호, 이상천,장대진, 황복희의워

- 사무보조(의회 직원)
  - 전문위원 신현의, 행정주사 이 만, 행정주사보 이원철, 속기사

#### 라. 교육환경위원회

ㅇ 감사위원장 : 신영호 교육환경위원장

 감사 위원: 김순견, 권준택, 김성하, 김응규, 김준호, 박승학, 박종욱. 정보호의원

- 사무보조(의회 직원)
  - 전문위원 김영수, 행정주사 이복영, 행정주사보 박종식, 속기사

#### 마. 농수산위원회

ㅇ 감사위원장 : 방대선 농수산위원장

감사 위원: 정상진, 강영서, 김정기, 김주연, 양재경, 이상효, 이용석, 이정백, 정무응의원

○ 사무보조(의회 직원)

- 전문위원 김학홍, 행정주사 박재구, 행정주사보 고재명, 속기사

#### 바. 산업관광위원회

- ㅇ 감사위원장 : 최영욱 산업관광위원장
- 감사 위원: 김석호, 김병진, 손경찬, 안순덕, 이원만, 이철우,

한혜련의원

- 사무보조(의회 직원)
  - 전문위원 김종태, 행정주사 이종한, 행정주사보 이재훈, 속기사

#### 사. 건설소방위원회

- 감사위원장 : 황상조 건설소방위원장
- 감사 위원: 권종연, 김기대, 박영화, 윤경희, 이종칠, 이달
   이호근, 장 욱, 채희영의원
- 사무보조(의회 직원)
  - 전문위원 김이찬, 행정주사 안중섭, 행정주사보 안 민, 속기사
- 3. 위원회별 감사일정 : 생 략
- 4. 감사요령 및 협조사항

#### 가. 감사진행순서

(1) "감사 선언"의 선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경상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관(부서)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라고 감사선언을 선포함.

※ 감사는 회의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의 활동으로 보기 때문에 감사 선언을 선포하는 것임.

#### (2) 위원장 인사

- 먼저 "감사 선언"을 한 후에 상임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포함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인사를 하게 됨.
- 의사일정은 "2003년도○○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으로 상정

#### (3) 증인 선서

0 선서의 근거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출석요구에 따라 출석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행정 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함.

#### ㅇ 선서 요령

- · 상임위원장의 안내에 따라 해당기관의 기관장 또는 부서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 증인선서(별첨 양식)를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서를 쥐고 오른손을 펴서 든다.
-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를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지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사무보조자가 이를 대행할 수 있음.
- ㅇ 증인이 알아야 할 사항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와 위증의 경우 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주지하여야 함.

#### (4) 기관장 인사 및 보고

감사대상기관 및 부서의 장은 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그 동안의 행정성과등을 위주로 간략하게 인사하고 출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해당기관 또는 부서의 감사와 관련한 소관 업무현황과 위원회에서 특별히 요구한 사항을 보고함.

#### (5) 질의 • 답변

○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출석요구에 따라 출석한 해당기관장과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감사형식인데, 이 경우에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하고 답변을 청취하는 과정이 결국 「질의・답변」의 형식으로 표현된다.

#### ○ 방법

감사위원들의 질의와 출석증인의 답변시에 질의시간과 진행 방법(일문일답식 또는 일괄 질의·답변식)에 대한 결정은 당해 위원회에서 하며,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제출 요구, 증인의 추가 출석요구나 현장확인등을 할 수 있다.

#### (6) 현지 확인

ㅇ 현지확인의 의의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현장 또는 현지의 상황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 또는 현지 해당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것이 현지확인의 과정이며, 현지확인 활동은 「검증」하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으며, 감사위원중 일부 위원으로 하여금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행할 수도 있음.

- ㅇ 현지확인의 진행순서
  - 현지확인을 하는데는 정형화된 진행순서는 없으나 대체로
  - ① 개회
  - ② 위원장 인사
  - ③ 감사대상 기관장의 인사 및 보고
  - ④ 질의·답변 및 서류제출요구
  - ⑤ 제출서류 실태 파악(필요한 서류 봉인)
  - ⑥ 위원장 인사 순으로 진행함

#### (7)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 선언

ㅇ 강평의 의의

감사가 사실상 종료하게 되면 위원장은 간단하게 감사진행과정에서 느낀 소감이나 감사중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나 당부할 사항등을 내용으로 강평을 함.

ㅇ 종료 선언

위원장의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이 끝나면 「이상으로 〇〇 기관(부서)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포 합니다」라고 당해 기관의 감사종료와 산회를 선포함

#### 나. 현지확인 협조

#### (1) 감사장 설치

- 현지확인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로 통보받은 즉시 감사위원의 규모등을 감안하여 수감에 가장 적합한 장소에 감사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 건설위원회 수감대상기관(부서)에서는 현지확인시에 설계도,
   시방서, 코아채취기 등을 준비하여야 하며,
- 별첨 「좌석 배치도」에 따라 감사위원의 좌석, 전문위원 좌석, 속기사의 속기를 위한 좌석을 배치하되 해당 위원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수감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2) 속기록 작성 준비

- ㅇ 속기석은 속기사의 교대가 가능하도록 2개 좌석을 배치하고,
- ㅇ 속기석에는 속기기록 청취용「헤드폰」을 설치하고
- 감사장에는 감사과정의 모든 질의·답변 내용을 녹음할 수 있는 장치와 담당직원을 배치하고,
- 기타 속기사로부터 속기에 필요한 서류요청이 있을 경우 협조하여야 함.

#### (3) 감사장 안내

- 감사장소의 안내는 수감기관의 해당부서에서 담당하여 감사 당일의 수감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여야 함.
- (4) 현지 이동에 따른 차량지원 현지확인을 위해 소요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가능한 의회 자체적으로 조치토록 하겠으나, 자체 해결이 불가능하여 차량지원을 요청할 경우 수감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5) 행정사무감사사항의 기록 및 홍보 현지확인을 위한 출장감사를 포함한 위원회별 모든 감사과정에 대하여 기록하고 보존할 사항과 함께 홍보사항은 관계부서에서 본 감사계획에 의하여 시행하고, 그외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감기관등에서 조치.

#### 다. 감사실시 결과보고 협조 - 의회 각 상임위원회 해당사항임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아래 내용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2003.12.12 (금)까지 의장에게 제출하기 바람.

- 감사의 목적, 대상기관(부서)
- ㅇ 감사실시 결과
  -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장소, 방법
  - 주요 감사실시 내용(소관별, 사항별)
- 감사결과 처리 의견
  - 시정요구사항(잘못된 점 등에 대하여 시정이 필요한 사항)
  - 처리요구사항(시정은 아니더라도 불합리하여 해당기관이 처리해야 할 사항)
  - 건의사항(건의나 희망사항)
- 주요 근거서류(감사결과 증빙서류) 별첨 요함
- 기타 특기사항

### 5. 증인출석 요구

#### 가. 중인출석요구 근거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대상 기관장 및 관계공무원과 그 밖에 관계되는 자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출석을 요구

#### 나. 출석대상 증인의 범위

출석증인의 대상은 경상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한 범위와 함께 해당 감사위원회에서 특별히 출석을 요구하는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함.

#### 다. 증인의 출석통지 및 증인 의무

(1) 해당 기관장 및 관계공무원

감사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증인에 대해서는 의회 의장 명의로 출석 해당일 3일전까지 『증인출석요구서』가 증인 당사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

(2) 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출석대상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하여야 함.

#### 라. 증인 출석 불가이유서 제출

의회로부터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과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참석할 수 없는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마. 증인의 보호

증인, 참고인은 증언 또는 진술내용의 비공개를 요구할 시는 감사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공개로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한 내용의 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

## 바. 증인출석요구 내역

## (1) 의회운영위원회

구 분	출석요구일시	감사대상기관 (출석장소)	출석요구 증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내용
의회운영 감사위원회 (13인)	11.28(금) 15:00	○ 의회사무처 (상임위회의실)	○의회사무처장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업무보고 ○질의·답변 ○자료제출 등

## (2) 기획위원회

구 분	출석요구일시	감사대상기관 (출석장소)	출석요구 증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내용
기 획	11. 21(금)	ㅇ 포항의료원	ㅇ 원장, 부장, 과장	
감사위원회	11:00	(동 의료원)		ㅇ 업무보고
(9인)				o 질의·답변
	11. 24(월)	ㅇ 김천의료원	ㅇ 원장, 부장, 과장	ㅇ 자료제출 등
	11:00	(동 의료원)		
	11. 25(화)	ㅇ 안동의료원	ㅇ 원장, 부장, 과장	
	11:00	(동 의료원)		
	11. 26(수)	ㅇ 경북개발공사	ㅇ 사장, 부장, 과장	
	11:00	(동 공사)		
	11. 27(목)	ㅇ 공무원교육원	ㅇ 원장, 과장	
	11:00	(동 교육원)		
	11. 28(금)	ㅇ 기획관리실	○ 실장,기획관,담당관	
	11:00	ㅇ 공보관실	ㅇ 공보관	
		ㅇ 감사관실	ㅇ 감사관	
		(상임위회의실)		
	11. 29(토)	ㅇ 감사결과정리		

## (3) 행정사회위원회

구 분	출석요구일시	감사대상기관 (출석장소)	출석요구 증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내용
행정 사회 감사위원회 (9인)	11. 21(금) 11:00 11. 22(토) 11:00	<ul><li>경도대학</li><li>(동 대학)</li><li>이 "</li></ul>	<ul><li>학장, 과장</li><li>ッ</li><li>ッ</li></ul>	○ 업무현황보고 ○ 질의·답변 ○ 자료제출 등
	11. 23(일) 11:00 11. 24(월)	<ul><li>○ 감사자료 수집 활동 및 검토</li><li>○ 지역개발사업</li></ul>		○ 사업현황 설명 및
	11:00	2개소 (현지확인)		질의 • 답변
	11. 25(화) 11:00	<ul><li>사회복지시설</li><li>2개소</li><li>(현지확인)</li></ul>		○ 기관현황 설명 및 질의·답변
	11. 26(수) 11:00	○ 자연환경연수원 (동 연수원)	○ 원장	<ul><li>업무현황보고</li><li>질의・답변</li><li>자료제출 등</li></ul>
	11. 27(목) 11:00	○ 사회복지여성국 (상임위회의실)	ㅇ 국장, 과장	0 "
	11. 28(금) 11:00	○ 자치행정국 (상임위회의실)	○ 국장, 과장	0 "
	11.29(토) 11:00	○ " ○ 감사결과 정리	0 "	0 "

## (4) 교육환경위원회

구 분	출석요구일시	감사대상기관 (출석장소)	출석요구 증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내용
교육 환경 감사위원회 (9인)	11. 21(금) 11:00	○ 김천, 구미, 상주 교육청(김천교육청)		<ul><li>○ 업무보고</li><li>○ 질의・답변</li><li>○ 자료제출 등</li></ul>
	11. 22(토) 09:30	○ 문경,예천인동,의성 교육청(예천교육청)	○ 문경,예천,안동,의성 교육장	
	11. 24(월) 11:00	○ 경주,영천,청도,경산 교육청(경주교육청)	○ 경주,영천,청도,경산 교육장	
	11. 25(화) 11:00	산림자원종합 개발사업소 팔공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ul><li>○ 국장, 과장, 소장</li><li>○ 원장,부장,지소장</li></ul>	
	11. 26(수) 11:00	n	n	
	11. 27(목) 11:00		○ 부교육감, 국장, 과장, 직속기관장	
	11. 28(금) 11:00	n	n	
	11. 29(토)	○ 감사결과정리		

## (5) 농수산위원회

구 분	출석요구일시	감사대상기관 (출석장소)	출석요구 증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내용
농 수 산 감사위원회 (10인)		○ 농수산국 (상임위회의실)	○ 국장,과장,사업 소장(지소장 포함)	<ul><li>○ 업무보고</li><li>○ 질의・답변</li><li>○ 자료제출 등</li></ul>
	11. 24(월) 11:00	○ 축산기술연구소 (현지감사)	○ 소장	
	11. 25(화) 11:00	○ 가축위생시험소 서부지소 (현지감사)	○ 소장	
	11. 26(수) 11:00	○ 농수산국 ○ 농업기술원 (상임위회의실)	<ul><li>국장,과장,사업 소장(지소장포함)</li><li>원장,국장,과장 사업소장,시험장장</li></ul>	
	11. 27(목) 11:00	○ 생물자원연구소 (현지감사)	ㅇ 소장	
	11. 28(금) 11:00	○ 청도복숭아시험장 (현지감사)	○ 장장	
	11. 29(토) 11:00	o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회의실)	○ 원장,국장,과장 사업소장,시험장장	

## (6) 산업관광위원회

구 분	출석요구일시	감사대상기관 (출석장소)	출석요구 증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내용
산업 관광 감사위원회 (8인)		○ 경제통상실 ○ 문화체육관광국 (상임위회의실)	○ 실장, 과장 ○ 국장, 과장,사업 단장	<ul><li>○ 업무보고</li><li>○ 질의・답변</li><li>○ 자료제출 등</li></ul>
	11.24(월) 11:00	○ 경상북도체육회 ○ 도 생활체육협의회 (상임위회의실)		
	11.25(화) 11:00	○ 경주세계문화 엑스포 (상임위회의실)		
	11.26(수)	○ 운수연수원(구미) ○ 도청산수건관(감천) (현지확인)		
	11.27(목)	○ 한국국학진흥원인동) (현지확인)		
	11.28(금) 11:00	○ 경제통상실 ○ 문화체육관광국 (상임위회의실)	<ul><li>실장, 과장</li><li>국장,과장,사업</li><li>단장</li></ul>	

## (7) 건설소방위원회

구 분	출석요구일시	감사대상기관	출석요구 증인	출석요구내용
⊤ ਦ		(출석장소)	(관계공무원)	<u> </u>
건설 소방	11. 21(금)	ㅇ 영주소방서		
감사위원회	11:00	(동 소방서)		ㅇ 업무보고
(10인)		○ 부석~도계간도로		o 질의·답변
		확・포장공사		ㅇ 자료제출 등
		(현지확인)		
		○영주~순흥간도로		
		확・포장공사		
		(현지확인)		
	11. 24(월)	○ 김천소방서		
	11:00	(동 소방서)		
		○태풍「루사」피해		
		복구현장(김천		
		구성외5개면)		
		(현지확인)		
	11. 25(화)	○ 성주소방서		
	09:30	(동 소방서)		
		○ 경주소방서		
		(동 소방서)		
	11. 26(수)	ㅇ 종합건설사업소	ㅇ 소장, 지소장	
	11:00	(지소포함)		
		(동 사업소)		
		○ 효령 ~신령간		
		재포장사업		
		(현지확인)		
	11. 27(목)	ㅇ 소방본부	○ 본부장, 과장,	
	11:00	(상임위회의실)	소방학교장,소방서장	
	11. 28(금)	ㅇ 건설도시국	<ul><li>국장, 과장</li></ul>	
	11:00	(상임위회의실)	7 0 , 7 0	
		(0 1 11 11 12)		
	11 00/5			
	11. 29(토)	○ 감사결과 정리		
		(상임위회의실)		
	1			

## 선 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 ○ 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경상북도의회행정사무 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실(국, 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 ○ ○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월 일

기관명:

000장 000 (인)

## 감사장 좌석배치도

○ ○ 전 문 위 원	○ 감사위원장 (감사반장)				
강         가         의 <t< th=""><th>O 속기석 O</th><th></th><th>감 사 위 원 석</th><th>O O O U 대 O</th><th></th></t<>	O 속기석 O		감 사 위 원 석	O O O U 대 O	
	출 석 공 무 원	석			출 입 만